

관세연구 17-01

#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2017. 3.

## 연구진

### 연구책임자

강성훈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이재선 관세사

김미정 연구원

# 목차

I. 서론	9
II. 누적기준 개요	11
1. 누적의 개념	11
2. 누적의 대상	13
3. 누적의 당사국	16
4. 누적의 영역	17
5. 누적의 유형	19
III. FTA별 누적기준	23
1. 재료누적	23
가. 재료누적을 채택한 FTA	24
나. 재료누적의 적용사례	29
다. 재료누적의 적용방법	32
2. 공정누적(양자간 완전누적)	36
가. 공정누적을 채택한 FTA	37
나. 공정누적의 적용사례	42
다. 공정누적의 적용방법	44
3. 완전누적(다자간 완전누적)	45
가. 완전누적을 채택한 FTA	46
나. 완전누적의 적용사례	48
다. 완전누적의 적용방법	54

4. 유사누적 .....	55
가. 유사누적을 채택한 FTA .....	56
나. 유사누적 적용사례 .....	59
다. 유사누적의 적용방법 .....	60
5. 교차누적 .....	63
가. 교차누적을 채택한 FTA .....	63
나. 교차누적의 적용사례 .....	65
다. 교차누적의 적용방법 .....	69
IV. 누적기준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2
1. 누적기준 활용의 문제점 .....	72
가. 누적대상의 증빙 문제 .....	72
나. 원산지검증 문제 .....	75
다. 공급자 등의 협조 문제 .....	79
2. 누적기준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	82
가. 누적대상의 증빙 문제 .....	82
나. 원산지검증 문제 .....	85
다. 공급자 등의 협조 문제 .....	88
V. 결론 .....	91
참고문헌 .....	97
부록 1. 우리나라 FTA 원산지증명서 .....	99
부록 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115
부록 3. EEA 공급자신고서 .....	116
부록 4. EEA 원산지증명서 .....	117

## 표목차

〈표 II-1〉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체계	11
〈표 II-2〉 누적 유형의 구분	20
〈표 II-3〉 누적 유형별 관계	22
〈표 III-1〉 한-EFTA FTA 누적조항	25
〈표 III-2〉 한-EU FTA 누적조항	26
〈표 III-3〉 한-터키 FTA 누적조항	26
〈표 III-4〉 한-아세안 FTA 누적조항	27
〈표 III-5〉 한-베트남 FTA 누적조항	28
〈표 III-6〉 한-인도 CEPA 누적조항	29
〈표 III-7〉 한-중 FTA 누적조항	29
〈표 III-8〉 한-미 FTA 누적조항	37
〈표 III-9〉 한-콜롬비아 FTA 누적조항	38
〈표 III-10〉 한-호주 FTA 누적조항	38
〈표 III-11〉 한-뉴질랜드 FTA 누적조항	39
〈표 III-12〉 한-칠레 FTA 누적조항	40
〈표 III-13〉 한-페루 FTA 누적조항	40
〈표 III-14〉 한-싱가포르 FTA 누적조항	41
〈표 III-15〉 NAFTA 누적조항	47
〈표 III-16〉 EEA 협정 완전누적조항	48

〈표 Ⅲ-17〉 EEA 협정 유사누적조항.....	56
〈표 Ⅲ-18〉 한-캐나다 FTA 누적조항.....	63
〈표 IV-1〉 한-EFTA, 한-아세안, 한-EU FTA의 원산지검증 절차.....	77
〈표 IV-2〉 한-캐나다,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 절차.....	79

## 그림목차

[그림 II-1] 누적의 개념도 .....	12
[그림 III-1] 한-미 FTA의 재료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30
[그림 III-2] 한-EU FTA의 재료누적 사례: 부가가치기준 .....	31
[그림 III-3] 양자간 재료누적의 적용.....	33
[그림 III-4] 다자간 재료누적의 적용.....	34
[그림 III-5] 한-미 FTA의 공정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	42
[그림 III-6] NAFTA의 완전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	49
[그림 III-7] NAFTA의 완전누적 사례: 부가가치기준 .....	50
[그림 III-8] EEA 협정의 완전누적 사례: 가공공정기준 .....	53
[그림 III-9] EEA 협정의 유사누적 사례: 가공공정기준.....	59
[그림 III-10] 교차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65
[그림 III-11]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 사례: 부가가치기준.....	66
[그림 III-12] 교차누적 사례: 가공공정기준.....	68
[그림 III-13] 교차누적의 적용.....	69



# I. 서론

- 우리나라는 2003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2017년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 15개의 FTA가 발효되었음<sup>1)</sup>
  -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음
  
-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와 더불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TPP<sup>2)</sup>, RCEP<sup>3)</sup> 등이 추진되고 있음<sup>4)</sup>
  - 특히 TPP와 RCEP은 역내투자 및 교역의 증진을 위하여 역내에서 발생한 공정, 재료 등 모든 부가가치를 인정하는 완전누적기준을 도입함
  
- 한편 EU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범유로지중해협약을 체결하고, EEA협정에 따른 누적예 해당 국가들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유사누적을 허용하여 FTA를 통한 지역통합을 공고히 하고 있음

---

1)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0&layoutMenuNo=30709](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0&layoutMenuNo=30709)(검색일자: 2017. 2. 20.)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으로 미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베트남, 캐나다, 일본, 페루,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가 참가하고 있음

3)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4) 김지선·유승록,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포스코경영연구소, 2015. 2, p.2

- 캐나다 역시 FTA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하여 누적을 적용할 수 있는 교차누적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음
- 글로벌 생산 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누적기준은 FTA 체결국 간 기존 역내 생산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sup>5)</sup>
  - 다만, 생산에 사용한 모든 재료의 원산지정보, 원가정보 및 공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누적기준의 활용은 제한적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자간 FTA의 확산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누적기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적기준의 개념부터 적용방법까지 살펴보고,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데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누적기준은 각국의 필요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sup>6)</sup> 제II장에서는 누적기준의 개념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누적을 구분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유형을 살펴봄
  - 제III장은 제II장에서 구분한 누적이 유형별로 그 누적을 적용하고 있는 협정의 조문, 적용사례, 적용방법 등을 살펴봄
  - 앞서 살펴본 조문, 사례, 적용방법 등을 통하여 제IV장에서는 누적기준을 적용하는데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5) 박지은·제현정,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TRADE FOCUS』 2016년 18호, 한국무역협회, 2016. 5, p. i

6) 박지은·제현정(2016), p. i

## II. 누적기준 개요

### 1. 누적의 개념

- FTA에서는 계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에 따른 인하 또는 철폐된 세율이 적용되는데,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협정별로 마련하고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은 기본원칙, 일반기준, 그리고 보충기준으로 구성됨
-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기본원칙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반기준을 보다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이 보충기준이며, 누적기준은 이러한 보충기준 중의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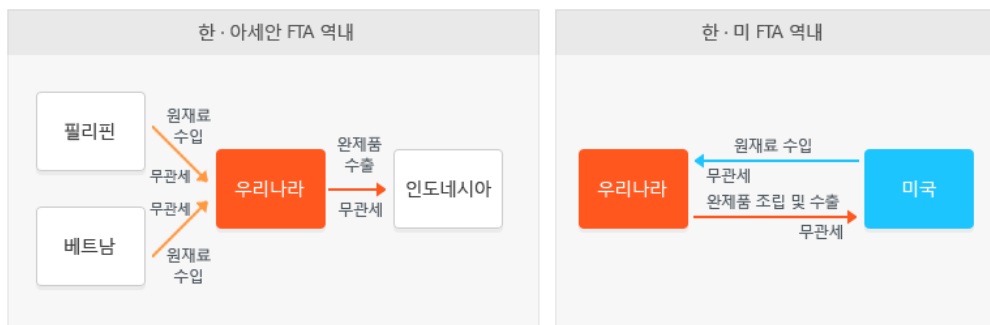
〈표 II-1〉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체계

구분	종류		
기본원칙	① 직접운송원칙    ② 역내가공원칙    ③ 충분가공원칙		
일반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독기준	① 세번변경기준    ② 부가가치기준    ③ 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	2개 이상 제시되어 있는 단독기준 중 1개만 선택하여 충족
조합기준	2개 이상 제시되어 있는 단독기준 모두를 충족		
보충기준	① 누적기준    ② 최소허용기준    ③ 중간재 규정    ④ 대체가능물품 ⑤ 간접재료    ⑥ 포장·운송용기    ⑦ 세트물품    ⑧ 부착품, 예비부품 등		

자료: 관세청 FTA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9&layoutMenuNo=30723](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9&layoutMenuNo=30723)(검색일자: 2017. 2. 17); FTA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contents.do?step=4&method=contents&contents\\_seq=135&mainNum=0201](http://okfta.kita.net/contents.do?step=4&method=contents&contents_seq=135&mainNum=0201)(검색일자: 2017. 2. 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누적기준이란 원산지결정 시 다른 당사국<sup>7)</sup>에서 발생한 재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하거나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수행되거나 창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을 말함<sup>8)</sup>
  - 예를 들어 한-칠레 FTA 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칠레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의 누적(Cumulation)은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에서 창출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것과 합산하는 것을 의미함<sup>9)</sup>
  - 다른 당사국에서 창출된 요소란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을 말함

[그림 II-1] 누적의 개념도



자료: FTA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검색일자: 2017. 2. 17.)

- FTA에서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일방 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누적기준은 이를 확대하는 개념임<sup>10)</sup>

7) 원문 자료에서는 ‘체약상대국’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나 1:N 협정의 경우 누적이 허용되는 다수국 간은 체약상대국이 아니므로 ‘다른 당사국’으로 기재하였음

8) 관세청 FTA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aWordDicaryList.do?layoutMenuNo=30734&searchKeyword=&searchCondition=&startWord=%eb%82%98&endWord=%eb%8b%a4&engWord=&currentPageNo=3#>(검색일자: 2017. 2. 21.)

9) 김영훈, 「FTA원산지기준상 특례에 관한 일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4. 12, p.112

-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은 하나의 국가(일방 당사국, 수출국)에서 충족되어야 하지만 누적을 허용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 공정 또는 부가가치를 포함시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례에 해당함<sup>11)</sup>
- 누적기준은 최종 생산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고, 일방 당사국의 생산자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재료<sup>12)</sup>를 최종 생산품의 생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sup>13)</sup>
  
- 누적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원산지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누적기준은 단순한 보충기준이 아니라 기본원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sup>14)</sup>

## 2. 누적이 대상

- 누적대상이란 실질적으로 누적을 통하여 원산지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하며<sup>15)</sup> 계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이 그 대상이 됨
- 누적이 대상에 따라 크게 재료만을 누적이하는 재료누적이와 생산공정 및 부가가치를 누적이하는 공정누적이로 구분할 수 있음

---

10) 임목삼·임성철,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무역학회지』 제41권 제5호, 한국무역협회, 2016. 11, p.92

11) 김영훈(2014), p.112

12)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은 원산지재료로 간주되며, 불충족 물품은 완전누적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된 공정이나 다른 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역내의 것으로 간주됨

13) 김영춘·박홍규·송병준,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5. 5, p.6

14)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Ⅱ』, 2010. 9, p.320

15) 진병진·임병호·유정호, 「FTA 교차누적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6. 12, p.104

- 공정을 누적하는 경우 해당 공정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도 누적이 가능하므로 공정누적의 대상에는 부가가치도 포함됨

- 재료누적은 계약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생산과정에 사용하여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한 재료를 최종 상품 생산국가의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sup>16)</sup>
  -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나 재료를 누적하는 것을 뜻하며 역내의 단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었거나 실질 변형이 일어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만 누적을 인정함<sup>17)</sup>
  - 재료누적은 최종재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만을 역내산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비원산지재료는 역외산으로 간주함<sup>18)</sup>
- 공정누적은 FTA를 체결한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누적조항을 말함<sup>19)</sup>
  - 공정누적은 좁게는 원산지결정기준의 가공공정기준의 누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공정누적을 통하여 계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누적이 가능함<sup>20)</sup>
    - 공정누적을 언급하고 있는 NAFTA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sup>21)</sup>에서 부가가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 활동의 누적을 허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NAFTA에서는 공정누적 조항을 통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최종 상품을 생산

16) 강준하, 「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 3, p.12

17) 박지은·제현정(2016), p.3

18) 박지은·제현정(2016), p.5

19) 강준하(2015), p.12

20) 김영훈(2015), p.114

21) 김영춘(2015), p.10; 박지은·제현정(2016), p.6

하는 데 역내산 가치를 포함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sup>22)</sup>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누적을 의미함

○ 따라서 공정누적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재료 누적뿐 아니라 비원산지재료의 역내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까지 인정함<sup>23)</sup>

- 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재료가 비원산지로 판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 수행된 공정 및 부가가치는 최종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역내산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음

□ 재료누적은 누적의 대상 중 원산지재료만의 누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부분누적 (Partial Cumu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공정누적은 투입되는 재료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재료뿐 아니라 모든 생산 활동의 누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완전누적 (Full Cumulation)이라고 부름

□ 2017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모든 FTA협정은 재료누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페루,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공정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 한-아세안 FTA의 경우 품목별기준을 통하여 공정누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함

- 제6101호의 품목별기준에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단·봉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22) CBP, <https://www.cbp.gov/trade/nafta/guide-customs-procedures/other-instances-confer-origin/accumulation>(검색일자: 2017. 2. 13.)

23) 박지은·제현정(2016), pp.5~6

### 3. 누적의 당사국

- 누적이 허용되는 체약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자누적과 다자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sup>24)</sup>
  - 양자누적은 FTA 체약당사국이 각각 한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누적으로 1:1 FTA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누적의 형태임<sup>25)</sup>
  - 다자누적은 FTA 체약당사국의 한쪽(1:N) 또는 양쪽(N:N)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인정되는 누적의 형태를 말함
  
- 다자누적의 경우 1:N FTA와 N:N FTA에서의 누적의 방법이 달라짐
  - 1:N FTA의 경우 자국과 체약상대국으로 구분되어 누적이 허용되며, N:N FTA에서는 여러 체약당사국간 누적이 허용됨
    - 예를 들어 1:N FTA 중의 하나인 한-아세안 FTA는 베트남의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최종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함
    - 반면, 우리나라의 원산지재료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에 투입되어 베트남으로 수출된다면 우리나라의 원산지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sup>26)</sup>
  
- 우리나라의 경우 한-EFTA, 한-EU, 한-아세안 FTA는 체약상대국인 EFTA, EU, 아세안 국가 내에서 다자누적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FTA는 양자누적이 가능함
  - 한-아세안 FTA의 경우 품목별기준에서 다자누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제1102.20호의 품목별기준에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24) 강준하(2015), p.11

25) 한-EU FTA의 경우 EU의 각 국가뿐 아니라 EU도 체약당사국이라는 점에서 1:1 협정으로 분류되지만, 여러 EU 국가 내에서 누적이 가능하므로 다자누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26) 아세안 국가 내에서는 다자누적이 가능하지만, 아세안의 체약상대국인 우리나라의 원산지재료를 최종 수출국 또는 최종 수입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면 다자누적이 불가능함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생산은 반드시 수출국 1개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음

#### 4. 누적의 영역

- 누적영역이란 누적이 적용되는 영역의 범위를 의미하며 FTA 내 누적(intra-FTA)과 FTA 간 누적(inter-FTA)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27)</sup>
  - FTA 내 누적은 단일 FTA 내에서 가능한 누적을 말하며, 1개의 협정 내에서 누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국이 체약국의 수에 따라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음
  - FTA 간 누적은 2개 이상의 FTA 간에 이루어지는 누적으로 누적 적용 시 한쪽 FTA 협정의 재료 및 생산 활동은 다른 FTA 협정의 원산지로 간주될 수 있음
  
- FTA 간 누적은 EU가 유럽 및 지중해 국가들 간의 FTA 네트워크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하여 EEA 협정에서 FTA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누적을 인정하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을 규정하면서 도입됨<sup>28)</sup>
  - 1990년대 유럽은 60여개에 달하는 FTA를 체결하였으나 각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단일 FTA 역내에 한정된 누적이 유럽 및 지중해 전역에 걸쳐 원자재와 중간재를 공급받는 복잡한 생산 네트워크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고려한 누적을 도입함
  - EU, EFTA, 페로스제도, 바르셀로나선언<sup>29)</sup> 참여국<sup>30)</sup>, EU의 안정 및 연합과정

---

27) 진병진 외 2인(2016), p.103

28) 박지은·제현정(2016), p.13

29) 1995년 EU 회원국과 지중해연안국이 바르셀로나에서 유럽-지중해 파트너십 결성을 선언하였으며, 2010년까지 유럽과 지중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 중의 하나임. 정성훈·강현수, 「유럽연합의 지중해 지원정책: 문명과 경제 사이」, 『한국경제지리학회 2003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3, p.77

30)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EEA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sup>31)</sup>참여국<sup>32)</sup>, 몰도바는 범유로지중해 (Pan-Euro-Mediterranean)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FTA 간에 원산지 지위를 가진 상품 및 재료의 누적을 허용함

- 유사누적은 상호 FTA를 체결한 각 국가가 공동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누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FTA 간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하나로 통일하기 어려운 지역 간에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캐나다에서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고안함<sup>33)</sup>
  - 교차누적은 FTA 간의 원산지규정이 동일하지 않아도 누적이 허용되는 개념임<sup>34)</sup>
    - EU 및 EFTA와 역사적으로 EU에게 일방적으로 호혜를 받는 국가는 EU의 주도로 원산지기준을 통일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사누적을 채택함
    - 이와는 다르게 FTA 간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단일하게 통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미주, 아시아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FTA 간 누적조항이 교차누적임<sup>35)</sup>
- 유사누적과 교차누적은 FTA 간 적용할 수 있는 누적기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공동 원산지규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임<sup>36)</sup>
  - 공동 원산지규정의 유무에 따라 누적이 대상이 되는 재료 등이 충족하여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적용방법이 달라짐

---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3 Diagonal cumulation of origin 2. {4}

- 31) EU 가입협상 전단계로 해당 국가가 EU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치, 경제 및 제도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개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될 경우 안정 및 제후 협정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함.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EU 정책 브리핑』, 2차 개정판, 외교통상부, 2010, p.44
- 32)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3 Diagonal cumulation of origin 1. {3}
- 33) 박지은·제현정(2016), p.13
- 34) 진병진 외 2인(2016), p.104
- 35) 박지은·제현정(2016), p.13
- 36) 김영춘 외 2인(2015); 임목삼·임성철(2016)에서는 교차누적과 유사누적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APEC, 2009/CT12/CTI-MAG/TPD/004;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SECO), *Cro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에서는 유사누적과 교차누적을 구분하고 있음

- 유사누적은 공동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판정, 증명 등이 이루어지면 누적이 가능함
- 반면, 교차누적의 경우 제3국과 체약상대국의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sup>37)</sup>하므로 누적대상인 원산지재료는 제3국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으로 누적을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과의 교차누적을 허용하고 있는 캐나다-페루 FTA의 경우 미국산 원재료가 캐나다에서 최종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고, 그 최종 상품이 페루로 수입된 경우 미국산 원재료는 NA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그 증명도 NA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됨

- 우리나라에서 유사누적을 도입한 FTA는 없으며, 한-캐나다 FTA의 경우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미국과의 교차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 EEA협정에서 지중해 연안 국가 등에 대하여 유사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 교차누적 개념을 고안한 캐나다는 이스라엘, EFTA, 페루, 요르단, 파나마 등의 FTA에 교차누적 조항을 채택하고 있음<sup>38)</sup>

## 5. 누적이의 유형

-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sup>39)</sup>에서 누적을 FTA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수를 기준으로 양자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 유형은 누적이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음<sup>40)</sup>

37) SECO, *Cro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 2013, p.38

38) 박지은·제현정(2016), p.13

39) 권순국, 「누적이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2. 12, p.104; 강준하(2015), p.10; 김영춘 외 2인(2015), p.6; 임목삼·임성철(2016), p.92

- 특히 양자누적은 2개국 간의 원재료를 누적대상으로 하며, 완전누적은 다자간의 재료 및 생산 활동까지 누적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양자간에서도 재료 및 생산 활동까지 누적할 수 있고, 다자간 누적에서도 재료만을 누적하는 협정이 있으므로 누적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수는 유형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유사누적 또한 FTA 간에 적용될 수 있는 누적의 하나로 FTA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수와는 무관한 개념임
- 따라서 누적의 유형은 누적대상, 누적영역, 누적당사국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누적은 그 대상에 따라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으로 구분됨
  - 누적이 적용되는 영역에 따라 FTA 내 누적과 FTA 간 누적으로 구분되며, FTA 간 적용되는 누적은 공동 원산지규정의 유무에 따라 유사누적과 교차누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또한 누적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자누적과 다자누적으로 구분됨

〈표 II-2〉 누적 유형의 구분

구분	누적대상	누적영역	원산지규정	누적당사국
재료(부분)누적	재료	관계없음	-	관계없음
공정(완전)누적	모든 생산 활동	관계없음	-	관계없음
양자누적	관계없음	FTA 내	-	2
다자누적	관계없음	관계없음	-	3 이상
유사누적	관계없음	FTA 간	동일	3 이상
교차누적	관계없음	FTA 간	상이	3 이상

자료: 저자 작성

- 누적의 대상에 따라 누적을 구분한다면 재료누적과 공정누적 또는 부분누적과 완전누적으로 나눌 수 있음
  -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은 무엇을 누적하였는지 그 대상을 직접 언급하여 분류하는 개념이며, 부분누적과 완전누적은 누적 대상의 일부 또는 모두를 누적하는지에 중점을 둔 개념임
    - 따라서 재료누적은 부분누적을, 공정누적은 완전누적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누적을 그 대상에 따라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으로 구분함
    -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어 있는 FTA 중 양자간 협정에서만 공정누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자간 공정누적만을 공정누적으로 구분하여 먼저 살펴봄
    - 또한 완전누적은 다자간의 재료 및 생산활동 누적이란 개념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으므로 다자간에 적용되는 공정누적을 완전누적으로 구분함
  
- 누적의 영역에 따라 누적을 구분한다면 FTA 내와 FTA 간에서 적용되는 누적이 있으며, FTA 간에서 적용되는 누적은 공동 원산지규정의 유무에 따라 유사누적과 교차누적으로 구분됨
  - 부분누적(재료누적)과 완전누적(공정누적)의 개념과는 그 구분 기준이 다른 개념이므로 FTA 간에서 부분누적 또는 완전누적이 이루어진다면 부분 유사누적, 완전 교차누적 등과 같이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엄격히 누적을 구분한다면 부분누적과 완전누적이라는 개념은 FTA 내에서 이루어지는 누적을 그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만을 지칭함
    - 만약 완전누적 등이 FTA 간 이루어진다면 유사 또는 교차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완전 유사누적, 완전 교차누적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누적이 그 당사국 수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양자누적과 다자누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FTA 간에 허용되는 누적인 유사누적과 교차누적의 경우 계약상대국 이외의 제3국이 누적이 당사국이 되므로 양자누적과 다자누적의 구분이 실익이 없음

- 부분누적(재료누적)과 완전누적(공정누적)의 경우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간 부분누적, 양자간 완전누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II-3〉 누적 유형별 관계

누적대상	누적 당사국	누적영역		
		FTA 내	FTA 간	
			원산지규정 동일	원산지규정 상이
재료	2	(양자간) 부분	-	-
	3 이상	(다자간) 부분	(부분) 유사	(부분) 교차
공정	2	(양자간) 완전	-	-
	3 이상	(다자간) 완전	(완전) 유사	(완전) 교차

자료: 저자 작성

### Ⅲ. FTA별 누적기준

#### 1. 재료누적

- 재료누적은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산지재료를 생산과정에 사용하여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한 재료를 최종 상품 생산국가의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sup>41)</sup>
  - 앞서 제Ⅱ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누적대상 중 원산지재료만의 누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부분누적(Partial Cumulation)이라고 부름
  
- 우리나라의 기발효 15개 FTA 협정은 모두 재료누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료누적 사례를 우리나라의 FTA 협정에 한하여 살펴봄
  - 2017년 2월 기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가 발효됨<sup>42)</sup>
  
- 우리나라는 FTA별로 재료누적 외에 채택한 누적이 종류가 다름
  - 재료누적: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터키, 한-중, 한-베트남
  - 재료누적, 공정누적: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미,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 재료누적, 공정누적, 교차누적: 한-캐나다 FTA

41) 강준하(2015), pp.11~12

42)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검색일자 2017. 2. 16.)

- 다음 ‘가’절에서는 재료누적만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7개 FTA의 협정문을 살펴 보고, 재료누적을 통한 FTA 활용 사례를 살펴봄
- 본 연구에서는 재료누적만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7개 FTA의 각 협정문에서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의 형태가 비슷한 협정별로 구분하였음

## 가. 재료누적을 채택한 FTA

### 1) 한-EFTA, 한-EU, 한-터키 FTA

- 한-EFTA, 한-EU, 한-터키 FTA는 유럽권 협정으로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원산지 재료를 결합하여 획득한 경우’로 명시하여 재료누적만을 인정함
- 또한 이들 FTA는 누적영역 내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이 최소가공기준(Minimal Process)<sup>43)</sup>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료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 각 협정문상 제6조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sup>44)</sup>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를 의미함
- 한편, 누적이 당사국의 수에 따라 한-EFTA FTA와 한-EU FTA는 다자누적, 한-터키 FTA는 양자누적으로 구분됨
  - 한-EFTA FTA는 1:N FTA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의 각 회원국이 체약당사국으로 다자누적이 적용됨
  - 한-EU FTA는 28개국<sup>45)</sup>으로 구성된 EU를 하나의 체약당사국으로 인정하여 1:1

43)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단순가공 또는 불충분 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함

44) 운송보관 동안의 보존공정, 포장변경, 포장해체 및 조립, 세탁, 세척, 다립질, 압착, 탈각, 표백, 연마, 도장, 탈피, 탈각, 씨 제거, 단순포장, 시험, 측정, 도살 등의 공정

45)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FTA 협정으로 구분되지만, EU 국가 간에는 다자누적이 가능함  
 ○ 한-터키 FTA 또한 1:1 FTA로 양자누적이 적용됨

〈표 III-1〉 한-EFTA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Article 3 Cumulation of Origin 1. Notwithstanding Article 2, materials originating in another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nnex shall be considered to be materials originating in the Party concerned.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going beyond that referred to in Article 6. 2. Products originating in another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nnex, which are exported from one Party to another, shall retain their origin when exported in the same state or without having undergone in the exporting Party working or processing going beyond that referred to in Article 6. 3.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where materials originating in two or more of the Parties are used and those materials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exporting Party not going beyond that referred to in Article 6, the origin is determined by the material with the highest customs value or, if this is not known and cannot be ascertained, with the highest first ascertainable price paid for that material in that Party
국문	제3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용되고 동 재료가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수출 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는 최고 과세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료: 한-EFTA 협정문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제3조(원산지 누적)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영국은 2016. 6. 23. EU 탈퇴 결정을 하였으나 한-EU FTA 미적용 관련 후속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표 III-2〉 한-EU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3. CUMULATION OF ORIGIN</p> <p>Notwithstanding Article 2,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a Party if such products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t shall not be necessary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p>
국문	<p>제3조 원산지 누적</p> <p>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p>

자료: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표 III-3〉 한-터키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3. CUMULATION OF ORIGIN</p> <p>Notwithstanding Article 2,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a Party if such products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t shall not be necessary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p>
국문	<p>제3조 원산지 누적</p> <p>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p>

자료: 한-터키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2)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는 아시아권 협정으로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에서 ‘체약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이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재료누적만을 인정함
- 또한 누적의 당사국 수에 따라 한-아세안 FTA는 다자누적, 한-베트남 FTA는 양자누적으로 구분됨
  - 한-아세안 FTA는 1:N 협정으로 10개국<sup>46)</sup>으로 구성된 아세안의 각 회원국을 체약당사국으로 인정하여 다자누적이 적용됨
    - 다만, 앞서 제II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의 경우 품목별기준을 통해 다자누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한-베트남 FTA는 1:1 FTA로 양자누적이 적용됨

〈표 III-4〉 한-아세안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Rule 7 ACCUMUL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nnex,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국문	제7조 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상품이, 특혜 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자료: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7조(누적)

46)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국임

〈표 III-5〉 한-베트남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ARTICLE 3.6 ACCUMUL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국문	제3.6조 누적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자료: 한-베트남 FTA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3.6조(누적)

### 3) 한-인도, 한-중 FTA

- 한-인도, 한-중 FTA는 아시아권 협정으로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에서 '체약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이 최종재의 재료로 결합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재료누적만을 인정함
- 또한 누적의 당사국 수에 따라 한-인도, 한-중 FTA는 모두 양자누적으로 구분됨
  - 한-인도, 한-중 FTA는 체약당사국이 각각 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1:1 FTA로 양자누적이 적용됨

〈표 III-6〉 한-인도 CEPA 누적조항

구분	조문
영문	ARTICLE 3.7 ACCUMULATION Originating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국문	제3.7조 누적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원산지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자료: 한-인도 CEPA 협정문 제3장 원산지규정 제3.7조(누적조항)

〈표 III-7〉 한-중 FTA 누적조항

구분	조문
영문	ARTICLE 3.7 ACCUMULATION Where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other Party, the goods or materials so incorporated shall be regarded to be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국문	제3.6조 누적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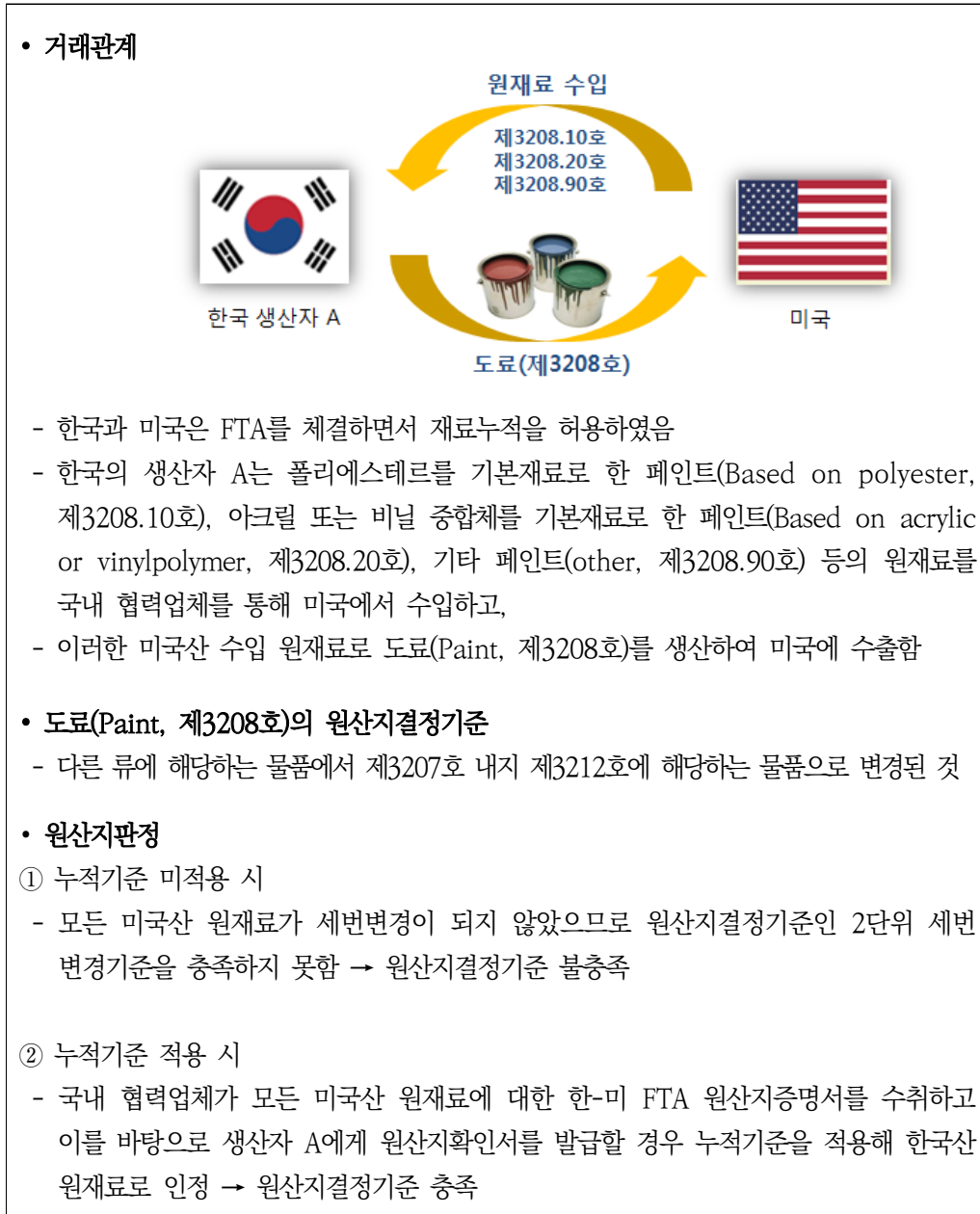
자료: 한-중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3.6조(누적)

## 나. 재료누적의 적용사례

### 1)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사례

- 다른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재료누적에 따라 역내산 재료로 간주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해당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해당 협정의 원산지를 획득하지 못한 비원산지재료는 역외산으로 간주되며, 세번변경을 충족하여야 함

[그림 Ⅲ-1] 한-미 FTA의 재료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활용 성공사례」, 2016, p.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사례

- 다른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재료누적에 따라 역내산 재료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 산정 시 역내산 가치에 포함됨
-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임

[그림 III-2] 한-EU FTA의 재료누적 사례: 부가가치기준

<p><b>• 거래관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EU는 FTA를 체결하면서 재료누적을 허용하였음</li> <li>- 한국의 생산자 A는 코어(Core, 제8504.90호)<sup>1)</sup>, 보빈(Bobbin, 제3923.40호)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와이어(Wire, 제8544.11호), 테이프(Tape, 제3919.10호) 등은 EU에서 수입하고, 기타 부품은 역외에서 수입함</li> <li>- 이러한 국내에서 조달한 원재료와 EU 및 역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한국의 생산자 A는 변압기(Transformer, 제8504.31호)를 생산하여 EU에 수출함</li> </ul>				
<p><b>• 변압기(Transformer, 제8504.31호)의 원산지결정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li> <li>②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sup>2)</sup>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li> </ul>				
<p><b>• 제조원가명세서</b></p>				
구분	품명	HS코드	단가(원)	원산지
완제품	변압기(Transformer)	8504.31	10,000(EXW)	
원재료	코어(Core)	8504.90	4,000	한국
	보빈(Bobbin)	3923.40	1,000	한국
	와이어(Wire)	8544.11	2,000	EU
	테이프(Tape)	3919.10	1,000	EU
	기타 부품	-	2,000	미상
합계			10,000	

## [그림 III-2]의 계속

## • 원산지판정

## ① 세번변경기준 적용

- 변압기(제8504.31)호와 동일한 호를 사용하는 비원산지 원재료가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 → 누적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원산지 획득

## ② 부가가치기준 적용

- 누적 미적용 시 역외산 원재료는 5,000원으로 비원산지재료비 비율(MC)이 50%로 동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5%를 초과함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MC = \frac{3,000 + 2,000}{10,000} = 50\% > 45\%$$

-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EU산 원재료 3,000원을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역외산 원재료는 2,000원이며, 비원산지재료비 비율(MC)은 20%로 감소함에 따라 동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5%를 초과하지 않음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MC = \frac{2,000}{10,000} = 20\% < 45\%$$

주: 1) Core(철심과 Coil 등으로 이루어진 변압기의 핵심 부품)

2) 공장도가격(Ex-works Price): 물품을 생산 공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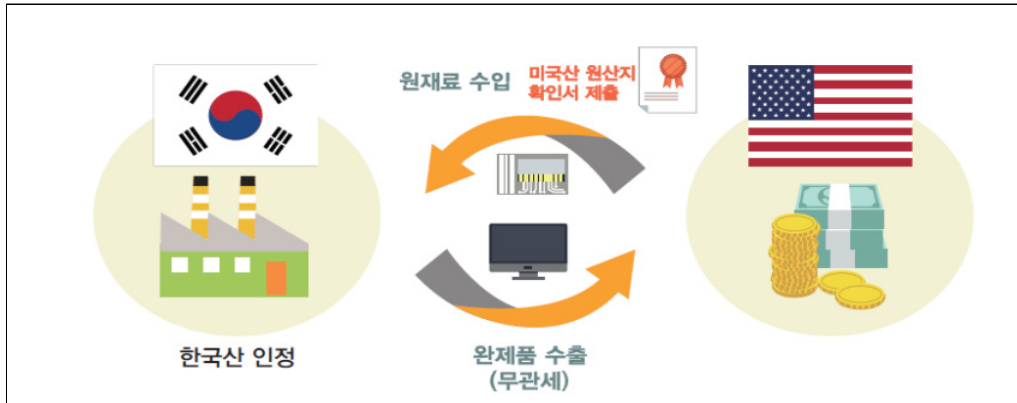
자료: 인천상공회의소, 『한-EU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2010, pp.15~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재료누적의 적용방법

## 1) 양자누적에서 재료누적의 적용방법

-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산지재료를 누적대상으로 하는 재료누적은 해당 원재료가 수출될 때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증빙서류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체결된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부록 1]을 참조

[그림 III-3] 양자간 재료누적의 적용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활용 성공사례」, 2016, p.1

## 2) 다자누적에서 재료누적의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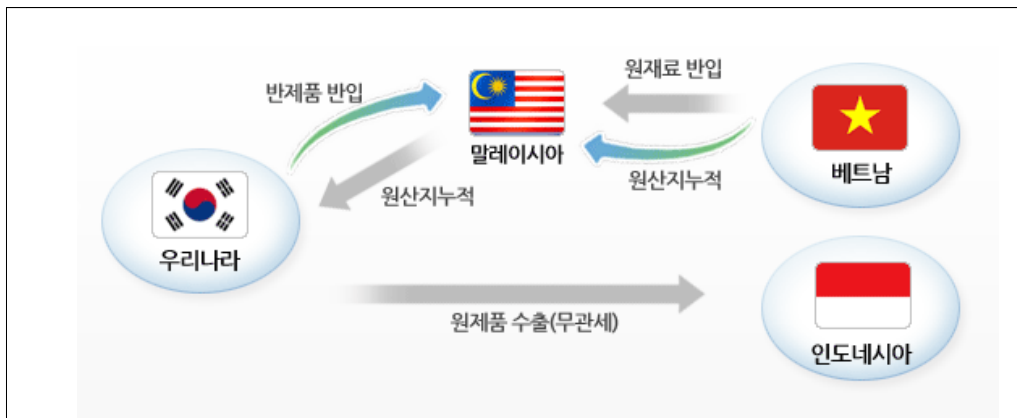
- 1:N 협정과 같이 체약당사국이 여러 국가인 경우 여러 국가 내에서 누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누적을 적용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이지만 서로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
  - 이 경우 서로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에서 아세안 국가들, 한-EFTA FTA에서 EFTA 국가들) 간에도 해당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sup>47)</sup> 발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체약상대국이 아닌 체약당사국 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물품이 수출입 거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인 다른 체약당사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에서

47)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조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중간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발급되어야 함<sup>48)</sup>

- 최초 원산지증명서에서 수입자와 수출자는 각각 최초 수입자와 최초 수출국자여야 하므로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계약상대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하여도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때에 인도네시아를 경유한다면 최초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발급되며, 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에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됨

[그림 Ⅲ-4] 다자간 재료누적의 적용



자료: 관세청 FTA 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16&layoutMenuNo=30730](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16&layoutMenuNo=30730)(검색일자: 2016. 3. 7.)

□ 한-EU FTA의 경우 1:1 협정으로 분류되지만 EU 국가 간에 다자누적이 발생할 수 있는데, EU는 각 개별 국가뿐 아니라 EU 자체도 계약당사국에 포함<sup>49)</sup>되어 있기 때문에

48)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제2항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EU 간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없음

○ EU 내에서는 동일 국가 내에서 원산지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sup>50)</sup>들을 근거로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 한-EFTA FTA는 원산지증빙에 있어 수출자가 발행하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언을 기재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관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보다는 다자누적이 용이함

○ 다만, 이 경우에도 누적이 적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한-EFTA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로 판정되어야 함

○ 한-EFTA FTA 또한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한-EFTA에서 EFTA 자체는 체약당사국이 아니므로

49) 한-EU FTA 협정문 제1.2조 일반정의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말한다.

50)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2조 증빙서류

로 EFTA 내에서 통용되는 원산지 지위 증빙서류가 국가 간의 누적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음

## 2. 공정누적(양자간 완전누적)

- 공정누적은 FTA 상대국에서 수행한 생산 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한 생산 공정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누적 조항을 말함<sup>51)</sup>
  - 앞서 제II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투입되는 재료의 원산지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료의 생산을 위해 수행된 공정이나 해당 공정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등 모든 생산활동의 누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이라고 부름
- 본 연구에서는 공정누적 사례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양자간 FTA에서의 완전누적을 공정누적으로, 다자간에서 적용되는 완전누적을 완전누적으로 구분함
- 우리나라의 기발효 15개 FTA 협정 중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등 8개 FTA 협정은 공정누적을 채택함
  - 한-캐나다 FTA는 공정누적뿐 아니라 교차누적도 채택하고 있으므로 후술함
- 다음 ‘가’ 절에서는 공정누적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7개 FTA의 협정문을 살펴보고, 공정누적을 통한 FTA 활용 사례를 살펴봄
  - 본 연구에서는 공정누적만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7개 FTA의 각 협정문에서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의 형태가 비슷한 협정별로 구분하였음

---

51) 강준하(2015), p.12

가. 공정누적을 채택한 FTA

1) 한-미,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 한-미,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는 미주권과 대양주권 협정으로 재료 누적과 공정누적을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이 2개 조항으로 구분됨
- 제1항에서는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를 명시하여 재료누적을 인정함
- 제2항에서는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고 명시하며 공정누적을 인정함

〈표 III-8〉 한-미 FTA 누적조항

구분	조문
영문	ARTICLE 6.5: ACCUMULATION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one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국문	제6.5조 누적 1.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료: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원산지 제6.5조(누적)

〈표 III-9〉 한-콜롬비아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3.6: ACCUMULATION</p> <p>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p> <p>2.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p>
국문	<p>제3.6조 누적</p> <p>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p> <p>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자료: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6조(누적)

〈표 III-10〉 한-호주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3.5: ACCUMULATION</p> <p>1. Originating goods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p> <p>2.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p>
국문	<p>제3.5조 누적</p> <p>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p> <p>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자료: 한-호주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5조(누적)

〈표 III-11〉 한-뉴질랜드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Article 3.6 : Accumulation 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국문	제3.6조 누적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2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료: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6조(누적)

2) 한-칠레, 한-페루, 한-싱가포르 FTA

- 한-칠레, 한-페루, 한-싱가포르 FTA는 미주권과 아시아권 협정으로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이 2개 조항으로 구분됨
- 제1항에서는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생산)에 결합된 경우’를 명시하여 재료누적을 인정함
- 제2항에서는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체약국 간 생산단계가 누적됨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III-12〉 한-칠레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4.5: Accumula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li> <li>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at a good is originating,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good, so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materials is considered as done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complies with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2</li> </ol>
국문	<p>제4.5조 누적계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품의 생산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li> <li>2. 상품의 원산지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li> </ol>

자료: 한-칠레 FTA 협정문 제4장 원산지규정 제4.5조(누적계산)

〈표 III-13〉 한-페루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3.6: ACCUMULA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li> <li>2. Production carried out by a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a Party may be accumulated with the production of one or more producer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or the other Party, in such way that the production of the materials incorporated into the good shall be considered as carried out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li> </ol>

〈표 III-13〉의 계속

구분	누적조항
국문	제3.6조 누적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원산지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느 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에 따라 수립된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료: 한-페루 FTA 협정문제3장 원산지규정 제3.6조(누적)

〈표 III-14〉 한-싱가포르 FTA 누적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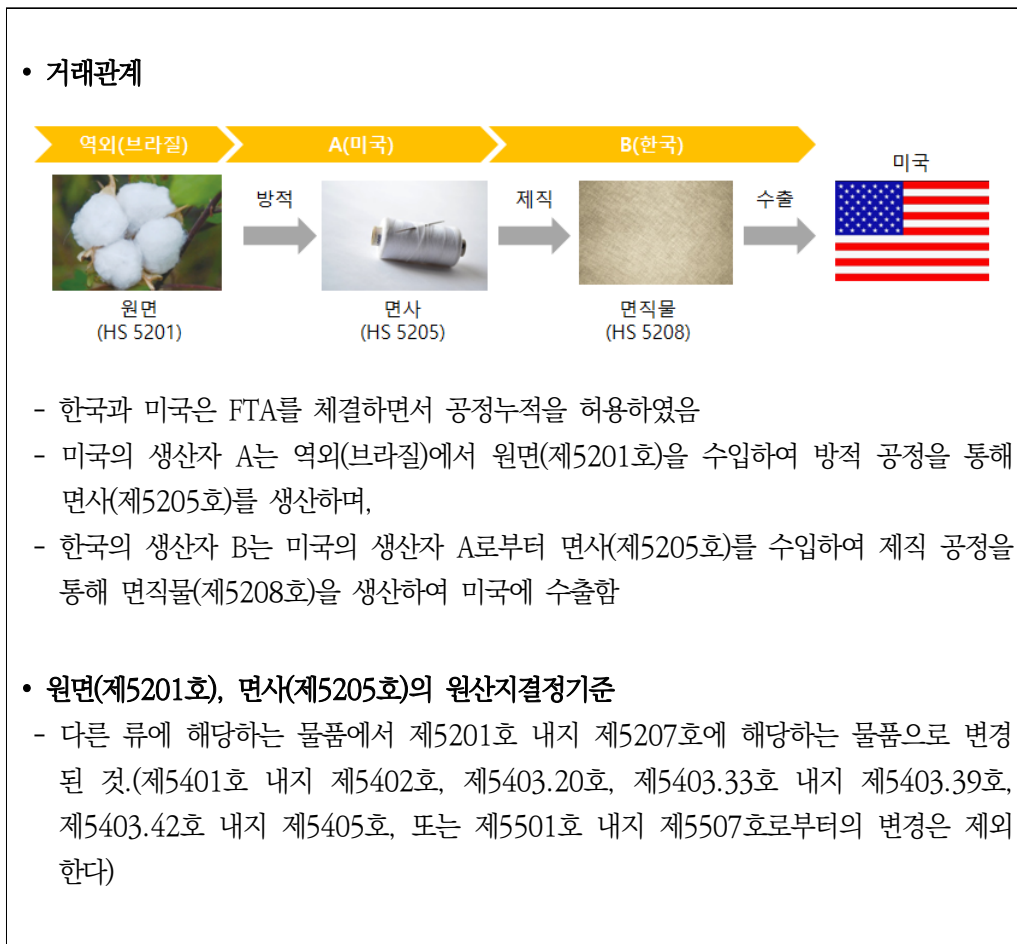
구분	누적조항
영문	ARTICLE 4.9: ACCUMULATION 1. Originating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at a good is originating,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so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materials is considered as done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complies with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2
국문	제4.9조 누적계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그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결합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자료: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4장 원산지 규칙 제4.9조(누적계산)

## 나. 공정누적의 적용사례

- 공정누적은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된 생산 활동을 자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다른 당사국에서 자국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세번변경 여부가 아닌 해당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기초재의 세번변경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함

[그림 Ⅲ-5] 한-미 FTA의 공정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그림 III-5]의 계속

• 면직물(제5208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이 상품군 외의 호에서 제5208호 내지 제5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4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 원산지판정

공정	브라질산 원면 (제5201호)	⇒ 미국 생산자 A가 면사 제조(제5205호)	⇒ 한국에서 생산자 B가 면직물 제조(제5208호)
원산지기준	-	2단위 세번변경(CC)	4단위 세번변경(CTH) (제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
① 누적기준 미적용 시	브라질산	비원산지	원산지 불충족
② 누적기준 적용 시	브라질산	원산지 충족(제5201호 → 제5208호) 생산자 B가 생산자 A의 생산공정을 누적	

① 누적기준 미적용 시

- 미국 생산자 A의 면사: 브라질산(제5201호 → 제5205호로 2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음)
- 한국 생산자 B의 면직물: 비원산지(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제외 호인 제5205호의 면사로 생산되었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② 누적기준 적용 시

- 한국의 생산자 B가 미국의 생산자 A의 생산공정을 누적할 경우 제5201호에서 제5208호의 변경으로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짐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FTA 활용」, 20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공정누적의 적용방법

- 공정누적의 경우 원산지재료뿐 아니라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역내에서 수행되거나 창출된 공정 또는 부가가치도 누적할 수 있는데 공정누적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FTA 중 이에 대한 증명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은 없음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페루, 한-캐나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FTA 모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상품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누적을 위한 비원산지재료의 증명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한-칠레 FTA는 제5.2조52)에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싱가포르 FTA는 제5.1조53)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정의한 다음 제5.2조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페루 FTA는 제4.1조54)에, 한-캐나다 FTA는 제4.1조55)에, 한-페루 FTA는 제3.19조56)에, 한-콜롬비아 FTA는 제3.18조57)에 원산지증명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한-미 FTA는 따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조문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6.15조에서 특혜관세대우 신청 시 필요한 증명은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인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 52) 원산지증명서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 53)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상품이 제4장(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 서류와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양식을 말한다.
  - 54)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 55)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마련한다.
  - 56)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57)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고 특혜관세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청은 원산지증명서로 뒷받침된다.

- 이와 같이 비원산지재료의 공정이나 부가가치를 누적하기 위한 서식이 FTA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공정누적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내에서는 비원산지재료의 누적을 위해 가공공정이나 부가가치를 증빙하는 서류로 국내제조(포괄)확인서<sup>58)</sup>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법에 근거를 둔 서류로서 계약상대국과의 원산지증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원산지검증 등에서 적정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받을 수 있을지 위험이 있음

### 3. 완전누적(다자간 완전누적)

- 완전누적은 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Originating Materials), 공정(Working or processing), 부가가치(Value added) 등을 모두 누적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누적의 형태를 말함<sup>59)</sup>
- 완전누적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재료누적 조항과 함께 공정누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누적을 통해 부가가치의 누적도 허용하는 방법으로 완전누적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자간 적용되는 완전누적의 대표적인 사례로 NAFTA와 EEA 협정에 한해 살펴봄
- 앞서 제II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NAFTA의 경우 공정누적 조항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누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누적으로 분류함
  -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으로 구성됨
- EEA는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한 당사국 간에는 완전누적이 적용되며, 계약당사국의 영역을 규정함으로써 완전누적을 명시함

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으로 부록 2 참조

59) 강준하(2015), p.11

- EEA 회원국은 EU 28개국과 EFTA 4개국을 포함함

### 가. 완전누적을 채택한 FTA

- NAFTA는 북미권 협정으로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이 2개 조항으로 구분됨
  - 제1항에서는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인정함
    - a)에서 '비원산지재료는 (중략) 역내부가가치 요건 충족을 거치는 경우'를 명시하여 부가가치 누적을 인정함
  - 제2항에서는 '제404(10)조의 목적상 제1항에 따라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가지고 제품 생산에 누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제품은 단일 생산자의 생산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완전누적을 인정하고 있음
  
- EEA는 유럽권 협정으로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이 2개 조항으로 구분되는데 완전누적은 PROTOCOL 4의 일반요건 제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음
  -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협정에서 적용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은 단일영역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여 완전누적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다른 1개 조항 제3조는 유사누적을 규정하므로 후술하기로 함

〈표 III-15〉 NA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404: Accumulation</p> <p>1.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shall, at the choic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be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provided that:</p> <p>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an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set out in Annex 401, and the good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nd</p> <p>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p> <p>2. For purposes of Article 402(10), the production of a producer that chooses to accumulate its production with that of other produc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production of a single producer.</p>
국문	<p>제404조 누적</p> <p>1.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되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그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p> <p>a)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는, 전적으로 한쪽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 영역에서, 부속서 40133)에 의거 적용가능한 관세 품목분류 변화와 그 상품이 적용가능한 역내부가가치 요건 충족을 거치는 경우, 그리고</p> <p>b)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p> <p>2. 제402(10)조의 목적상, 제1항에 따라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가지고 제품 생산에 누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제품은 단일 생산자의 생산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p>

자료: NAFTA Agreement Chapter Four: Rules of Origin Article 404

〈표 III-16〉 EEA 협정 완전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2 General requirements</p> <p>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the following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p> <p>(a) products wholly obtained in the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p> <p>(b) products obtained in the EEA incorporating materials which have not been wholly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p> <p>For this purpos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shall be considered as a single territory.</p>
국문	<p>제2조 일반 요건</p> <p>1. 이 협정 시행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EEA를 원산지로 간주한다.</p> <p>(a) 제4조의 의미상 EEA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p> <p>(b) EEA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와 결합하여 EEA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EEA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이러한 목적으로, 이 협정에서 적용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은 단일영역으로 간주한다.</p>

자료: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2 General requirements

## 나. 완전누적의 적용사례

### 1)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사례

- 완전누적은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된 생산 활동을 자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다른 당사국에서 자국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세번 변경 여부가 아닌 해당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기초재의 세번변경 여부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함

-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기초재의 세번이 최종 제품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그림 III-6] NAFTA의 완전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p><b>• 거래관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국과 B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완전누적을 허용하였음</li> <li>- A국의 생산자는 역외국에서 원면(제5203호)을 수입하여 방직 공정을 통해 면사(제5205호)를 생산하며,</li> <li>- B국의 생산자는 A국의 생산자로부터 면사(제5205호)를 수입하여 제직 공정을 통해 면직물(제5208호)을 생산함</li> </ul>			
<p><b>• 제5203호, 제5205호의 원산지결정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1호 내지 제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5호, 또는 제5501호 내지 제5507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li> </ul>			
<p><b>• 제5208호의 원산지결정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상품군 외의 호에서 제5208호 내지 제5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제5401호 내지 제5404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li> </ul>			
<p><b>• 원산지판정</b></p>			
공정	역외산 원면 (제5203호)	⇒ 역내 A국 생산자가 면사 제조(제5205호)	⇒ 역내 B국 생산자가 면직물 제조(제5208호)
원산지기준	-	2단위 세번변경(CC)	4단위 세번변경(CTH) (제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
① 누적기준 미적용 시	역외산	비원산지	원산지 불충족
② 누적기준 적용 시	역외산	원산지 충족(제5203호 → 제5208호) 생산자 B가 생산자 A의 생산공정을 누적	

## [그림 III-6]의 계속

## ① 누적기준 미적용 시

- 생산자 A가 생산한 면사: 비원산지(제5203호 → 제5205호로 2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음)
- 생산자 B가 생산한 면직물: 비원산지(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제외 호인 제5205호의 면사로 생산되었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② 누적기준 적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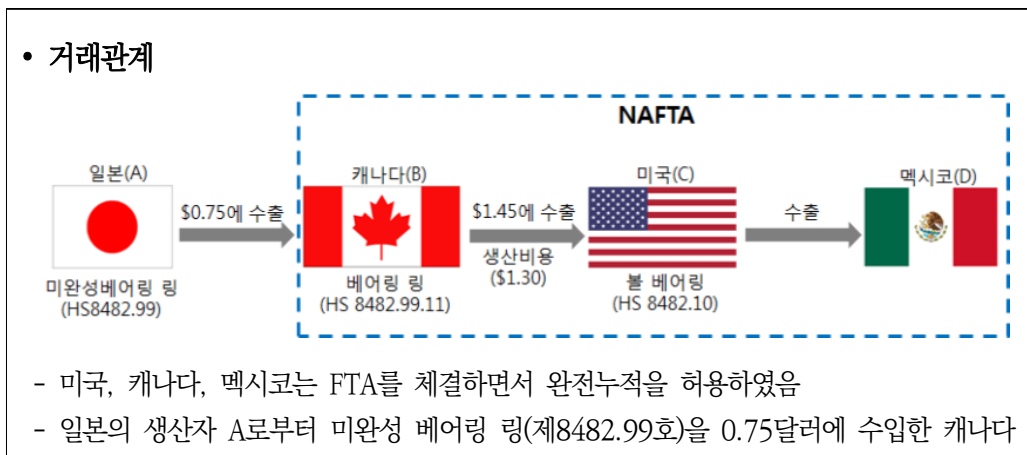
- 역내 B국 생산자가 역내 A국 생산자의 생산공정을 누적할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인 제5201호에서 제5208호로 4단위 세번변경이 되었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자료: Stefano Inama,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308~30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사례

- 완전누적 적용 시 완제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중 역내 부가가치 부분은 완제품의 부가가치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음
- NAFTA에서는 역내 부가가치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완전누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그림 III-7] NAFTA의 완전누적 사례: 부가가치기준



[그림 III-7]의 계속

<p>생산자 B는 1.30달러의 생산비용으로 베어링 링(제8482.99.11호)를 제조하여 미국의 생산자 C에게 1.45달러로 수출함</p> <p>- 미국의 생산자 C는 캐나다 생산자 C에게 수입한 원재료로 볼 베어링(제8482.10)을 생산하여 멕시코 수입자 D에게 수출함</p>																																													
<p>• 베어링 링(제8482.99호)의 원산지결정기준</p> <p>- 다른 호로부터 제8482.91호 내지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p>• 볼 베어링(제8482.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p> <p>- 다른 호로부터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p> <p>(a) 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sup>1)</sup> method) 60% 이상 또는</p> <p>(b) 순원가법(Net cost method) 50% 이상</p>																																													
<p>• 완전누적 조항: 제404조 제2항</p> <p>2.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가지고 제품 생산에 누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제품은 단일 생산자의 생산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p>																																													
<p>• 소요부품명세서(Bill of Materials): 미국 생산자 B의 볼 베어링(제8482.10호)</p>																																													
<p>누적 미적용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역</th> <th>단가(달러)</th> </tr> </thead> <tbody> <tr> <td>비원산지재료</td> <td>1.45</td> </tr> <tr> <td>원산지재료</td> <td>0.45</td> </tr> <tr> <td>인건비</td> <td>0.75</td> </tr> <tr> <td>간접비</td> <td>0.05</td> </tr> <tr> <td>총합계</td> <td>2.70</td> </tr> </tbody> </table> <p>주: 1) 캐나다 생산자 A의 베어링 링 판매비용</p>		내역	단가(달러)	비원산지재료	1.45	원산지재료	0.45	인건비	0.75	간접비	0.05	총합계	2.70	<p>누적 적용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역</th> <th>단가(달러)</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베어링 링</td> <td>미완성베어링 링 (일본산)</td> <td>0.75</td> <td rowspan="4">비원산지재료의 역외 부가가치</td> </tr> <tr> <td>원산지재료</td> <td>0.15</td> </tr> <tr> <td>인건비</td> <td>0.35</td> </tr> <tr> <td>간접비</td> <td>0.05</td> </tr> <tr> <td colspan="2">원산지재료</td> <td>0.45</td> <td></td> </tr> <tr> <td colspan="2">인건비</td> <td>0.75</td> <td></td> </tr> <tr> <td colspan="2">간접비</td> <td>0.05</td> <td></td> </tr> <tr> <td>완제품</td> <td>총합계</td> <td>2.55</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내역	단가(달러)	비고	베어링 링	미완성베어링 링 (일본산)	0.75	비원산지재료의 역외 부가가치	원산지재료	0.15	인건비	0.35	간접비	0.05	원산지재료		0.45		인건비		0.75		간접비		0.05		완제품	총합계	2.55	
내역	단가(달러)																																												
비원산지재료	1.45																																												
원산지재료	0.45																																												
인건비	0.75																																												
간접비	0.05																																												
총합계	2.70																																												
구분	내역	단가(달러)	비고																																										
베어링 링	미완성베어링 링 (일본산)	0.75	비원산지재료의 역외 부가가치																																										
	원산지재료	0.15																																											
	인건비	0.35																																											
	간접비	0.05																																											
원산지재료		0.45																																											
인건비		0.75																																											
간접비		0.05																																											
완제품	총합계	2.55																																											

## [그림 III-7]의 계속

• 베어링 링(제8482.99호)의 원산지판정

- 베어링 링(제8482.99호)의 경우 미완성 베어링 링(제8482.99호)으로부터 생산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따라서 베어링 링은 비원산지재료

• 볼 베어링(제8482.10호)의 원산지판정

① 세번변경기준 적용

- 볼 베어링(제8482.10호)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 볼 베어링과 베어링 링의 4단위 세번 모두 제8482호로 동일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② 부가가치기준 적용

1) 누적기준 미적용 시

- 캐나다 생산자 B가 생산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생산자 C는 비원산지재료의 역내 부가가치 누적이 불가능함
- 거래가격(TV)법을 사용한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인 60% 이상이어야 하지만 역내 부가가치가 46%로 60% 미만임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RVC = \frac{TV + VNM^{2)}}{TV} = \frac{2.70 - 1.45}{2.70} = 46\% < 60\%$$

2) 누적기준 적용 시

- 캐나다 생산자 B의 생산정보를 통해 누적을 적용할 경우 순원가(NC)법을 사용한다면 역내 부가가치가 71%로 볼 베어링(제8482.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50%를 초과함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RVC = \frac{NC - VNM}{NC} = \frac{2.55 - 0.75}{2.55} = 71\% > 50\%$$

주: 1) FOB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 가격

2)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물품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자료: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https://www.cbp.gov/trade/nafta/guide-customs-procedures/other-instances-confer-origin/accumulation>(검색일자: 2017. 2. 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가공공정기준의 충족사례

□ 완전누적이 허용되는 경우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은 자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됨

[그림 III-8] EEA 협정의 완전누적 사례: 가공공정기준

• 거래관계

• 남성용 셔츠(제6205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사(yarn)로부터 제조(Manufacture from yarn)

• 원산지판정

공정	역외산 면사 (제5205호)	⇒ 포르투갈 생산자 A가 면직물 가공(제5208호)	⇒ 노르웨이 생산자 B가 남성용 셔츠 생산(제6205호)
원산지기준	-	사(yarn)로부터의 제조	
① 누적기준 미적용 시	역외산	비원산지	원산지 불충족
② 누적기준 적용 시	역외산	원산지 충족(제5208호 → 제6205호) 생산자 B가 생산자 A의 가공공정(weaving)을 누적	

① 누적기준 미적용 시  
- 역외산 면사를 가공하여 포르투갈 생산자 A가 생산한 면직물(제5208호)은 비원산지이며,

## [그림 Ⅲ-8]의 계속

- 이를 가공하여 노르웨이 생산자 B가 생산한 남성용 셔츠(제6205호)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인 '사(yarn)로부터의 제조'를 충족하지 못함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② 누적기준 적용 시

- 노르웨이 생산자 B가 포르투갈 생산자 A의 역외산 사(yarn)로부터의 제직(weaving) 공정을 누적할 경우 역내에서 수행된 생산 활동으로 간주되며,  
- 노르웨이 생산자 B의 가공공정인 봉제(sewing) 공정을 통해 생산된 남성용 셔츠(제6205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사(yarn)로부터의 제조'를 충족함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자료: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EXPLANATORY NOTES CONCERNING THE PAN-EURO-MEDITERRANEAN PROTOCOLS ON RULES OF ORIGIN, 200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완전누적의 적용방법

- 계약당사국의 모든 생산과정을 누적할 수 있는 완전누적의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이 필요함
  - 원산지재료는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비원산지재료의 가공공정, 부가가치 등은 원산지증명서로 증빙이 불가능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함
- EEA 협정의 경우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공급자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를 누적재료의 원산지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음<sup>60)</sup>
  - EEA 협정에 따라 원산지판정 시 공급자신고서는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함<sup>61)</sup>

60)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27 Supplier's declaration 1.

61)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27 Supplier's declaration 2.

- 한편, 이러한 생산 과정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최대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장기 공급자신고서(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를 사용할 수 있음<sup>62)</sup>
- 공급자신고서는 협정에서 정한 신고서 양식<sup>63)</sup>을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첨부하여야 함<sup>64)</sup>
- 공급자신고서의 1번 란에는 공급물품(비원산지재료)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명세를 작성하여야 함
  - 제공된 물품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the goods supplied)
  -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4단위 세번(Heading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등(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 2번 란에서는 1번 란에 기재되지 않은 원재료는 EEA 협정에 따른 원산지재료임을 확인하여야 함
- 또한 공급자의 주소 및 서명, 작성자의 성명 등과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

#### 4. 유사누적

- 유사누적은 상호 FTA를 체결한 각 국가가 공동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누적을 허용함
-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상호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62)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27 Supplier's declaration 4.

63) 해당 양식은 부록 3을 참조

64)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27 Supplier's declaration 3.

### 가. 유사누적을 채택한 FTA

- EEA 협정은 당사국 간에 완전누적을 허용하며, 범유로지중해(Pan-Euro-Med) 국가에 대해서는 유사누적을 허용함<sup>65)</sup>
- EEA 협정문상 유사누적은 PROTOCOL 4의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음
-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EEA를 원산지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여 역외국과의 유사누적을 인정함
  - EU,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 EU의 안정 및 연합과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참여국(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 페로스 제도
  - 바르셀로나선언(Baselona Declaration) 참여국(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시리아, 튀니지) 등

〈표 III-17〉 EEA 협정 유사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3 Diagonal cumulation of origin</p> <p>1.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 if they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Switzerland (including Liechtenstein)<sup>2</sup>, Iceland, Norway, the Faroe Islands, Turkey, the European Union or in any participant in the European Union’s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sup>3</sup>,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in the EEA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t shall not be necessary for such materials to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p>

65)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arrangements-list/paneuromediterranean-cumulation-pem-convention\\_en](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arrangements-list/paneuromediterranean-cumulation-pem-convention_en)(검색일자: 2017. 3. 2.)

〈표 III-17〉의 계속

구분	누적조항
	<p>2.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 if they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any country which is a participant in the Euro- Mediterranean partnership, based on the Barcelona Declaration adopted at the Euro-Mediterranean Conference held on 27 and 28 November 1995, other than Turkey<sup>4</sup>,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in the EEA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t shall not be necessary for such materials to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p> <p>3. Where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in the EEA does not go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the product obtained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 only where the value added there is greater than the value of the materials used originating in any one of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If this is not so, the product obtained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country which accounts for the highest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in the EEA.</p> <p>4. Products, originating in one of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which do not undergo any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EEA shall retain their origin if exported into one of these countries.</p> <p>5.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may be applied only provided t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s applicable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acquisition of the originating status and the country of destination;</li> <li>(b) materials and products have acquired originating status by the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identical to those given in this Protocol; and</li> <li>(c) notices indicating the fulfilment of the necessary requirements to apply cumulation have been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series) an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according to their own procedures.</li> </ul> <p>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all apply from the date indicated in the notic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series).</p>

〈표 III-17〉의 계속

구분	누적조항
	<p>The European Union shall provide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through the European Commission, with details of the Agreements, including their dates of entry into force, and their corresponding rules of origin, which are applied with the other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p>
국문	<p>제3조 원산지의 유사누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1)조의 조항(67)을 침해하지 않고, 만약 생산자가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포함),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페로 제도, 터키,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의 안정화 및 연합 과정의 참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EEA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다만, EEA 내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1)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선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li> <li>2. 제2(1)조의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만약 생산자가 1952년 11월 27, 28일에 개최된 유럽-지중해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바르셀로나 선언에 기반하여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터키를 제외한 그 어떤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EEA를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EEA 내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 언급된 공정을 넘어선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li> <li>3. EEA 내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지 않는 때, 획득된 제품은 그 부가가치가 제1항, 제2항에서 규정된 국가들 중 어느 하나를 원산지로 하여 사용된 재료의 부가가치보다 클 경우에 한하여 EEA의 원산지제품인 것으로 간주된다. 단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획득된 제품은 EEA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산지재료 중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li> <li>4. 제1항, 2항에서 규정된 국가 중 하나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EEA 내에서 어떤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국가들 중 하나에서 수출된 경우에 한해서 원산지를 유지한다.</li> <li>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누적은 오직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만 적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GATT 24조에 의한 특혜무역협정은 원산지지위의 획득에 관련된 체약 당사국과 목적국인 체약 당사국에 적용이 가능하다.</li> <li>(b) 재료와 제품은 이 의정서에서 주어진 것과 동일한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의해 원산지지위를 획득한다. 그리고</li> <li>(c) 누적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 요건의 이행을 명시하는 공고는 OJEU(EU 관보, C 시리즈)와 그들 자신의 절차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관련 협정에 게재한다.</li> </ol> </li> </ol> <p>이 조항에서 규정된 누적은 OJEU(EU 관보, C 시리즈)에서 발행된 공고문에 명시된 일로부터 적용한다.</p> <p>유럽연합은, 다른 체약당사국에 유럽연합을 통해 발효일 제1항과 2항에서 규정된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해당 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상세한 사항을 규정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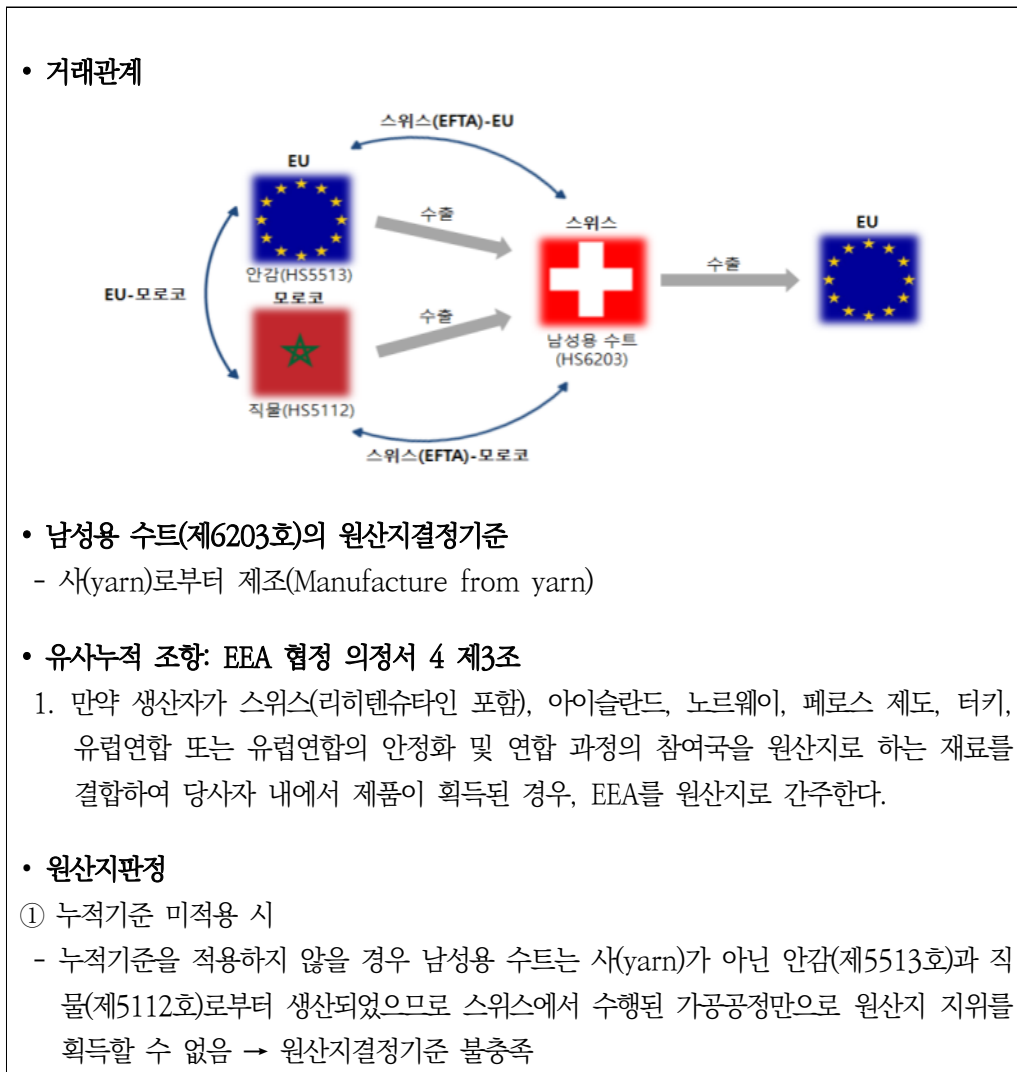
주: 1) 제6조 불충분공정(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자료: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3 Diagonal cumulation of origin

나. 유사누적 적용사례

- 유사누적이 허용되는 상호 FTA를 체결한 국가가 공동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FTA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누적을 인정함

[그림 III-9] EEA 협정의 유사누적 사례: 가공공정기준



## [그림 Ⅲ-9]의 계속

## ② 누적기준 적용 시

- 스위스, EU, 모로코의 3국 간 거래에서 유사누적을 적용할 경우
- 스위스의 남성용 수트(제6203호)는 각각 EU와 모로코의 원산지를 획득한 안감(제5513호)과 직물(제5112호)을 이용하였으므로 EU와 모로코에 수출 시 역내산으로 인정됨
- 한편, 최종 생산 및 가공공정은 스위스에서 수행되었으며, 해당 협약에 따라 최소한의 생산 및 가공을 초과함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자료: 스위스연방관세국(Swiss Federal Customs Administration), "Guide to the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of origin," 2016. 2, p.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유사누적의 적용방법

- EEA 협정에 따라 지중해 연안국가 등의 역외국의 재료를 누적하기 위하여 공동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됨
  - EEA 협정에 따른 각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부록 4]를 참조
- EE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① Movement Certificate EUR.1(이하 MC EUR.1) ② Movement Certificate EUR-MED(이하 MC EUR-MED) ③ 송장신고서 ④ 송장신고서 EUR-MED 등이 있음
  - MC EUR.1 또는 MC EUR-MED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임
    - 수출국의 세관은 수출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MC EUR.1 또는 MC EUR-MED를 발급함<sup>66)</sup>
  - 송장신고서 또는 송장신고서 EUR-MED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자율발급되는 방식의 원산지증명서임

66)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16 Procedure for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or EUR-MED

- 인증수출자 또는 6,000유로 미만인 상품의 수출자는 송장신고서 및 송장신고서 EUR-MED를 작성할 수 있음<sup>67)</sup>
- 송장신고서 또는 송장신고서 EUR-MED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언을 기재하면 됨<sup>68)</sup>

□ 원산지증명서는 종류별로 발급되는 경우가 각각 다른데 MC EUR.1과 송장신고서가, MC EUR-MED와 송장신고서 EUR-MED가 각각 동일한 경우에 발급됨

○ MC EUR.1<sup>69)</sup>과 송장신고서<sup>70)</sup>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됨

- 터키를 제외한 바르셀로나선언 참여국<sup>71)</sup>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와의 누적적용 없이 해당 물품이 EFTA, 페로스제도, 터키, EU 및 EU의 안정 및 연합과정 참여국<sup>72)</sup>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 EFTA, 페로스제도, 터키, EU 및 EU의 안정 및 연합과정 참여국 또는 터키를 제외한 바르셀로나선언 참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와의 누적적용 없이 해당 물품이 터키를 제외한 바르셀로나선언 참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 MC EUR-MED<sup>73)</sup>와 송장신고서 EUR-MED<sup>74)</sup>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됨

- 터키를 제외한 바르셀로나선언 참여국 중 하나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와 누적기준

67)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21 Conditions for making out an origin declaration or an origin declaration EUR-MED

68)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15 General requirements

69)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16 Procedure for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or EUR-MED

70)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21 Conditions for making out an origin declaration or an origin declaration EUR-MED

71)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72)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73)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16 Procedure for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or EUR-MED

74)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21 Conditions for making out an origin declaration or an origin declaration EUR-MED

이 적용된 경우

-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터키를 제외한 바르셀로나선언 참여국 중 하나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 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 물품이 터키를 제외한 바르셀로나선언 참여국 중 하나에 재수출될 경우

□ EE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모두 누적이 여부와 누적국가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sup>75)</sup>

- EEA 또는 누적이 적용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에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가 인정된 경우 'CUMULATION APPLIED WITH(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함
  - 누적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생산 시의 재료, 공정으로 누적된 모든 국가 또는 영역을 기재하여야 함
  - 또한 해당 문구를 적용한 경우 증빙을 위해서는 원산지의 최초 작업과 최종 작업에 대한 증명이 이월(전달)되어야만 함
- EEA 또는 누적이 적용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에 누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원산지가 인정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NO CUMULATION APPLIED'를 기재하여야 함

---

75) EEA Agreement PROTOCOL 4 Article 16 Procedure for the issue of a movement certificate EUR.1 or EUR-MED 6.

## 5. 교차누적

- 동일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FTA 간 누적을 허용하는 교차누적은 한-캐나다 FTA에서 미국산 원재료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음

### 가. 교차누적을 채택한 FTA

- 한-캐나다 FTA에서는 제3장 제3.7조 제3항에서 누적을 규정하면서 교차누적 등을 검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차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제87류 주 규정에서 자동차 등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미국산인 경우 해당 재료를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3.7조 제1항에서는 재료누적을, 제2항에서는 공정누적을 규정하고 있음

〈표 III-18〉 한-캐나다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영문	<p>Article 3.7 Accumula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li> <li>2.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is, at the choic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if: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sufficient production as defined in Article 3.3,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li> </ol> </li> </ol>

〈표 III-18〉의 계속

구분	누적조항
	<p>(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p> <p>3. The Parties may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to providing for other forms of cumulation, such as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cumulation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goods as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p>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p>Chapter 87. Note: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of heading 87.01 through 87.06 is an originating good, any material of Chapter 84, 85, 87, or 94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the material i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Party from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li> <li>2. the material would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material under the applicable rule of origin of this Agreement if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part of the free trade area established by this Agreement.</li> </ol>
국문  제3장 원산지규정	<p>제3.7조 누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li> <li>2.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되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는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리고</li> <li>나. 그 상품이 이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li> </ol> </li> <li>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li> </ol>

〈표 III-18〉의 계속

구분	누적조항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규정	제87류 주: 제8701호부터 제8706호까지의 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물품 생산에 사용된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4류의 모든 재료는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 1. 해당 재료가 미합중국의 영역으로부터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리고 2. 미합중국의 영역이 이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료는 이 협정의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 하에서 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

자료: 한-캐나다 FTA 제3장 원산지규정 제3.7조(누적);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규정 제87류 주

나. 교차누적의 적용사례

1)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사례

- 교차누적이 허용되는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역내산 재료로 간주됨에 따라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음
- 세번변경기준에서 일정 수준의 HS코드가 변경되어야 하는 재료는 비원산지재료에 한함

[그림 III-10] 교차누적 사례: 세번변경기준

• 거래관계

- A국, B국, C국은 각각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차누적을 허용하였음
- A국의 생산자는 역외에서 구리로 만든 바(제7407호)를 수입하여 연선(stranded wire)(제7413호)을 생산한 후 B국에 수출하였음
- B국의 생산자는 A국에서 수입한 구리로 만든 연선을 사용하여 동축케이블(제8544호)을 생산한 후 C국에 수출하였음

## [그림 Ⅲ-10]의 계속

- 동축케이블(제8544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413호의 구리로 만든 연선은 제외 한다.
- 원산지판정
  - ① 누적기준 미적용 시
    - 동축케이블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제외 호인 제7413호의 구리로 만든 연선으로 생산되었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② 누적기준 적용 시
    - 교차누적을 통하여 A에서 생산된 구리로 만든 연선을 B-C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 간주함에 따라 구리로 만든 연선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세번변경은 비원산지재료에 한하여 충족하여야 함)

자료: APEC, 2009/CT12/CTI-MAG/TPD/004, p.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사례

- 교차누적이 허용되는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역내산 재료로 간주됨에 따라 부가가치 산정 시 역내산 가치에 포함됨

## [그림 Ⅲ-11]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 사례: 부가가치기준

- 거래관계
  - 한국, 캐나다, 미국은 각각 FTA를 체결하였으며, 서로 간 동일 원산지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4류의 미국산 재료에 대하여 교차누적을 허용하였음
  - 캐나다의 생산자는 미국에서 수입한 엔진(제8408)과 자국에서 생산한 타이어(제4011호)를 사용하여 자동차(제8703호)를 생산한 후 한국에 수출하였음

[그림 III-11]의 계속

• 자동차(제8703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sup>1)</sup>의 55%, 또는
  -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sup>2)</sup>의 65%, 또는
-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이상인 경우

• 제조원가명세서

구분	품명	HS코드	단가	원산지
원재료비	엔진	8408	25	미국
	타이어	4011	5	캐나다
	기타부품	-	45	미상
인건비 등		-	20	-
판촉비 등		-	5	-
총합계			100	

• 원산지판정

① 누적기준 미적용 시

- $MC = (25+45)/100 = 70\% > 55\% \rightarrow$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NC = (25+45)/(100-5) = 73.7\% > 65\% \rightarrow$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RVC = 5/100 = 5\% \leq 35\% \rightarrow$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② 누적기준 적용 시

- $MC = 45/100 = 45\% < 55\% \rightarrow$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NC = 45/(100-5) = 47.4\% < 65\% \rightarrow$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RVC = (25+5)/100 = 30\% \leq 35\% \rightarrow$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주: 1) 생산지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당시 거래가격, 또는 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화물 운송비 및 보험료와 같이 그 상품이 생산지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도록 조정된 가격

2) 상품의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가격

자료: APEC, 2009/CT12/CTI-MAG/TPD/004, p.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가공공정기준 충족 사례

- 완전누적이 허용되는 FTA 협정에서 교차누적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교차누적이 허용되는 제3국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은 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됨

[그림 Ⅲ-12] 교차누적 사례: 가공공정기준

## • 거래관계

- A국, B국, C국은 각각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차누적을 허용하였음
- A국의 생산자는 역외에서 원면(제5201호)을 수입하여 사(yarn)(제5205호)를 생산한 후 B국에 수출하였음
- B국의 생산자는 A국에서 수입한 사(yarn)를 사용하여 풀오버(제6110호)를 생산한 후 C국에 수출하였음

## • 풀오버(제61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역내산 사(yarn)로 부터의 생산

## • 원산지판정

## ① 누적기준 미적용 시

- A국은 B-C FTA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A국에서 생산된 사(絲)는 역외산 재료이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② 누적기준 적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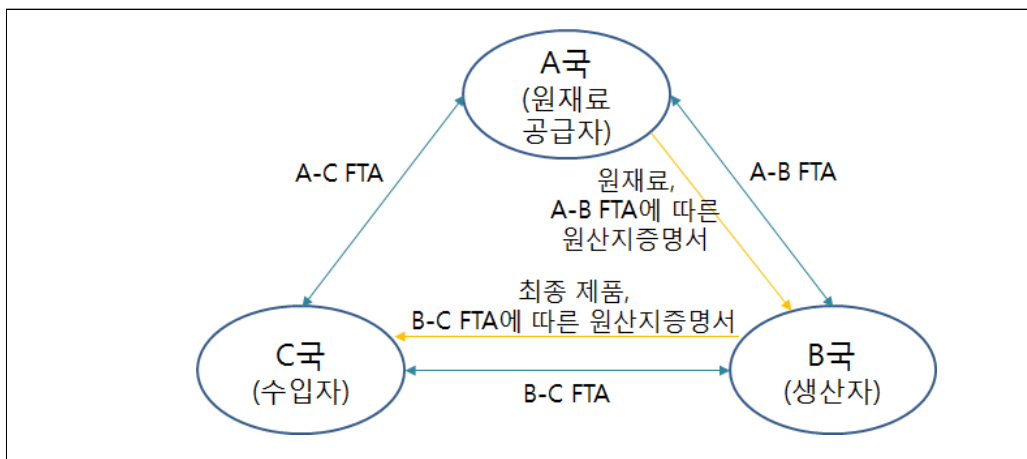
- A국에서 생산된 사(yarn)를 교차누적에 따라 역내산으로 인정하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자료: SECO, *Cro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 2013, pp.37~3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교차누적의 적용방법

- 교차누적은 동일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FTA 간 적용할 수 있는 누적으로 추가적인 세관절차나 원산지증명서의 변경 등을 요구하지 않음<sup>76)</sup>
- 계약상대국과 제3국의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재료는 교차누적을 허용한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됨<sup>77)</sup>
- 따라서 교차누적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수출입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 간(제3국과 계약당사국 중 한 쪽)에 체결된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누적이 적용될 수 있음

[그림 III-13] 교차누적의 적용



자료: SECO, *Cro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 2013, pp.37~3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의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교차누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① 미국에서 수입되고 ② 미국이 동 협정에서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일

76) APEC, 2009/CT12/CTI-MAG/TPD/004, p.11

77) SECO(2013), p.38

부인 경우 동 협정의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하에서 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교차누적이 적용되기 위하여 원재료가 미국에서 한국이나 캐나다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미국이 한-캐나다 FTA 협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이어야 함
  -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하여 제1.1조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고 규정하고 그 외의 언급은 없음
  - 교차누적을 허용한 FTA의 체약당사국이 비당사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경우 해당 비당사국의 영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간주<sup>78)</sup>하므로 한-미 FTA와 NAFTA에 따른 미국의 영역은 한-캐나다 FTA의 자유무역지대로 보임
-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된 원재료는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 대상이 되는데, 해당 원재료가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함
  - ‘동 협정의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하’라는 표현이 한-캐나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을 단지 교차누적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고 해석한다면 미국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미 FTA나 NAFTA에 따를 수도 있음
- 미국산 원재료에 대하여 한-캐나다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해석한다면 교차누적의 도입취지와 기능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교차누적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간 동일 원산지규정 없이도 지역통합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추가적인 세관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없이도 누적을 적용함으로써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음<sup>79)</sup>

□ 또한 미국산 원재료에 대하여 한-캐나다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원산지증명서도 이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는데, 제4.1조 제5항<sup>80)</sup>에서 원산지증명서는

78) APEC, 2009/CT12/CTI-MAG/TPD/004, p.6

79) APEC, 2009/CT12/CTI-MAG/TPD/004, p.10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자국 영역으로의 수입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체약당사국이 아닌 미국의 원재료 공급자는 한-캐나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석됨
- 따라서 미국산 원재료는 NAFTA 또는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교차누적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

80)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가 다음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가. 자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수입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에 정한 대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명시된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자국 영역으로의 동일한 상품의 복수 수입

## IV. 누적기준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누적기준 활용의 문제점

#### 가. 누적대상의 증빙 문제

##### 1) 1:N 다자누적의 원산지재료 증빙

- 1:N 협정의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계약당사국(N)에서 다자누적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계약상대국이 아닌 국가 내에서도 발급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음
- 한-아세안 FTA의 경우 베트남이 원산지인 재료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우리나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한다면 베트남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 베트남의 공급자를 수입자로 하고, 인도네시아의 생산자를 수출자로 하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 이 경우 계약당사국이지만 서로 계약상대국이 아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음
- 한-아세안 FTA는 제3국을 경유하여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국이 최초 수입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이때에 최초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입국을 수입국, 중간 경유국을 수출국으로 하여 발급되므로 수입국과 수출국이 계약상대국이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다자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도 서로 체약상대국이 아닌 당사국 간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누적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빙 절차와 검증 등에 위험이 따름
- 한-EFTA FTA도 1:N 협정으로 EFTA 간 누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한-EFTA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이 필요함
  - 한-EFTA FTA 역시 서로 체약상대국이 아닌 체약당사국 간에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또한 협정문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증빙서류가 단일국가로 취급되지 않는 EFTA 국가 간에서도 적용가능한지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함

## 2) 교차누적의 원산지재료 판정 및 증빙

- 공동 원산지규정이 없는 FTA 간 적용되는 교차누적의 경우 누적대상이 되는 원산지재료는 교차누적을 규정한 제3국과 체약상대국 간의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누적이 되지만 한-칠레 FTA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미국산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함
    - 해당 자동차 부품이 한-캐나다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캐나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누적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NA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NA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누적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교차누적을 소개하거나 분석하고 있는 선행연구<sup>81)</sup>에서도 교차누적을 적용하는 경우 누적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81) 진병진 외 2인(2016); 박지은·제현정(2016)

- 박지은·제현정(2016)에서는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 사례를 설명하면서 미국산 자동차 부분품의 원산지는 '한-캐나다 FTA'에 의해 미국산<sup>82)</sup>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한-캐나다 FTA에 의해 미국산이라는 표현이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기준에 의한 것을 국한한 것인지,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에 의한 것인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 반면, APEC, SECO의 자료에서는 교차누적의 대상인 원재료는 제3국과의 FTA에 따라 원산지재료<sup>83)</sup>임을 명시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설명<sup>84)</sup>하고 있는 점을 보아 제3국과 체약당사국의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교차누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그 적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실제로 교차누적을 활용하기 어려움
- 생산자나 원재료 공급자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판정 및 증빙에 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는데 원산지검증 시 세관당국의 해석과 상이하다면 협정세율 적용제한 등의 위험이 있음
    -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미국산 원재료가 NAFTA에 따르면 미국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캐나다 FTA에 따라 미국산으로 인정되어 우리나라로 수출 시 누적을 적용한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판정 등은 NAFT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재료의 판정 오류로 인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 지위가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적으로 한-캐나다 FTA와 NAFTA 또는 한-미국 FTA의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판정 및 증빙을 모두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업무 부담이 큼

---

82) 박지은·제현정(2016), p.12

83) SECO(2013), p.38

84) APEC 2009/CT12/CTI-MAG/TPD/004, p.11

### 3) 완전누적의 비원산지재료의 증빙

- 계약당사국의 모든 생산과정 투입과정을 누적할 수 있는 완전누적의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투입된 공정과 부가가치 중 역내에서 창출된 것은 누적이 가능하지만 한-싱가포르, 한-미국 FTA 등 양자간 완전누적(공정누적)을 도입한 협정에서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증빙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산지재료의 경우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누적재료의 원산지증빙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비원산지재료의 경우 공정, 부가가치 등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 누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가공공정이나 부가가치를 증빙하는 서류인 제조공정도, 제조원가명세서를 증빙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검증 시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위험 부담이 있음
  - 국내법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해외의 원재료 공급자에게 요청하여 수령하여 그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방법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검증 등의 위험이 있음

## 나. 원산지검증 문제

### 1) 다자누적의 원산지검증

- 원산지검증 대상에는 원재료 공급자도 포함<sup>85)</sup>되는데 다자누적의 경우 원재료 공급자

8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가 수출국 및 수입국 외의 다른 체약당사국에 소재하게 됨

-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국의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의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그 시일이 오래 소요될 수 있음

□ 그러나 다자누적이 적용되는 한-EFTA, 한-아세안,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여러 국가가 참여하였는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검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한-EFTA<sup>86)</sup>와 한-EU<sup>87)</sup>의 경우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검증결과에 대한 회신기한은 10개월임
  - EFTA 국가 간 또는 EU 국가 간 원산지누적이 된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규정은 없음
- 한-아세안의 경우 간접검증을 1차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하여 수입국 세관이 해외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수행함<sup>88)</sup>
  - 간접검증의 회신기한은 2개월이며, 방문검증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검증이 완료되어야 하며, 아세안 국가 간 누적기준이 적용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86) 한-EFTA FTA 협정문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

87)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원산지증명의 검증)

88)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검증)제14조, 제15조

□ 이와 같이 다자누적이 적용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절차와 기간 등이 일반 원산지검증과 동일함에 따라 검증에 대한 대응 기간의 부족 등에 따른 원산지규정 불충족으로 협정세율 적용이 제한될 위험이 있음

〈표 IV-1〉 한-EFTA, 한-아세안, 한-EU FTA의 원산지검증 절차

구분	검증방식	검증방식		회신기한 <sup>1)</sup>
		간접검증	직접검증	
한-EFTA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10개월
한-아세안	선(先) 간접검증 / 후(後)직접검증	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② 방문검증 <sup>2)</sup>	2개월
한-EU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10개월

주: 1) 수출국 검증기관이 수입국 검증 요청기관에 회신해야 할 기한임  
 2) 검증방문이 개시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자료: 관세청 FTA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97BrYBhfPXZz7jYJ6ZG95yDL2V2Z2M9TZGJHNTzLTv3YLIg9J6TM!1862554608?contentId=CONTENT\\_ID\\_000002811&layoutMenuNo=30725](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97BrYBhfPXZz7jYJ6ZG95yDL2V2Z2M9TZGJHNTzLTv3YLIg9J6TM!1862554608?contentId=CONTENT_ID_000002811&layoutMenuNo=30725), 검색일자 2017. 3. 7; FTA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8&mainNum=030801](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8&mainNum=030801)(검색일자: 2017. 3.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교차누적의 원산지검증

- 교차누적이 적용된 경우 FTA 계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원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FTA 규정에 따른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누가 원산지검증의 주체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최종 제품의 수출입 시 적용된 FTA에 따른 원산지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을 실시해야 하는지 교차누적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수출입 시 적용된 FTA에 따른 원산지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을 실시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한-캐나다 FTA에서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경우 미국산 원재료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당 미국산 원재료에 대하여 한-캐나다 FTA에 따라 검증을 실시할지 한-미국 FTA 또는 NAFTA에 따라 검증을 실시할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먼저 최종 제품에 적용되는 FTA에 따라 원산지검증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함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원재료 검증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 공급자의 경우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sup>89)</sup>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3국의 원재료 공급자의 경우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계약상대국이 아닌 제3국의 원재료 공급자에 대하여는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음
- 교차누적을 허용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의 경우 원산지검증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수행한다고 규정<sup>90)</sup>함에 따라 미국의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한-캐나다 FTA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검증 방식<sup>91)</sup>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상대국이 아닌 미국의 원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한-캐나다 FTA에 따른 수입국 세관당국의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검증 시 원산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게 됨

□ 교차누적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계약당사국과 제3국 간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원산지검증의 주체와 그 방법 또한 제3국과의 FTA 협정에 따라야

8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 제출기한)

90) 한-캐나다 FTA 제4.6조(원산지검증)

91) 관세청,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주요내용」, 2014. 12. p.18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산지검증은 최종 제품의 경우 체약당사국 간의 FTA에 따라, 누적이 적용된 원재료의 경우 제3국과 체약당사국인 수출국 간의 FTA에 따라 이원화되어 시행되어야 함
- 그러나 원재료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나 제3국과의 FTA에 원산지검증을 이관하는 등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IV-2〉 한-캐나다,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 절차

구분	검증방식	검증방식	
		간접검증	직접검증
한-캐나다	직접검증	-	서면질의, 방문검증
한-미	원칙 직접검증 / 예외 간접 또는 공동 검증 (섬유)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수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의 공동 방문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검증

자료: 관세청 FTA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sessionId=97BrYBhfPXZz7jYJ6ZG95yDL2V2Z2M9TZGJHNTzLTv3YLIG9J6TM!1862554608?contentId=CONTENT\\_ID\\_000002811&layoutMenuNo=30725](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sessionId=97BrYBhfPXZz7jYJ6ZG95yDL2V2Z2M9TZGJHNTzLTv3YLIG9J6TM!1862554608?contentId=CONTENT_ID_000002811&layoutMenuNo=30725), 검색일자 2017. 3. 7; FTA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8&mainNum=030801](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8&mainNum=030801)(검색일자: 2017. 3.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공급자 등의 협조 문제

### 1) 원재료 공급자의 업무 부담

- 다자누적 적용 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입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의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협조 유인이 없음
- 1:N 협정에서 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이지만 서로 체약상대국은 아닌 N국 간의 거래는 1-N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

니므로 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유인이 없음

- 반면, N:N 협정의 경우는 원재료를 수출하는 때에도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재료 공급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원재료 공급자는 생산자(최초 수입자, 최종 수출자)를 계약상대국으로 하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누적대상이 되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중 업무를 부담하게 됨

-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의 경우 베트남이 원산지인 재료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우리나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한다면 베트남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베트남 공급자는 인도네시아로 원재료 수출 시 해당 원재료의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생산자의 최종 제품의 원산지판정을 위하여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하여야 함

□ 완전누적이 다자간 이루어지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공정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원재료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이 업무 부담만 가중됨에 따라 원재료 공급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움

- 생산자(최초 수입자, 최종 수출자)가 원재료를 수입할 당시에는 해당 원재료를 어떤 제품의 생산에 투입할지, 생산된 제품을 어디로 판매할지 정해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는 원재료 공급자에게 누적이 적용가능한 모든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우리나라 수출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모든 협정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완전누적을 적용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또한 적용가능한 모든 협정에 대하여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특정 FTA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에 대한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모든 적용 가능한 FTA에 대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임

## 2) 누적대상의 비밀 유출

-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완전누적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지위뿐 아니라 가공과정, 가격 등의 정보를 생산자(최초 수입자, 최종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지만, 원재료 공급자는 이에 대한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가공공정이 업체만의 노하우인 경우 원재료 공급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비원산지재료의 역내가치와 역외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재료 공급자의 이윤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노출하게 하므로 원재료 공급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 비원산지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임
  -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직접 발급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음
  - 하지만 누적을 적용하는 경우는 생산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해야 하므로 정보의 노출이 불가피함

## 2. 누적기준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 가. 누적대상의 증빙 문제

#### 1) 다자누적의 원재료 원산지증빙 방식 마련

- 한-EU FTA의 경우 EU 국가 간 다자누적이 가능하지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EU 자체를 체약당사국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즉, EU를 하나의 국가와 같이 취급하여 EU 국가 간의 누적이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회계자료 같은 증빙서류만으로 누적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한-아세안 FTA나 한-EFTA FTA도 아세안 또는 EFTA를 체약당사국으로 포함시켜 아세안 또는 EFTA를 하나의 국가로 보아 각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아세안 또는 EFTA 국가 간 원산지재료가 이동하는 경우 아세안 또는 EFTA 내에서 통용되는 원산지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원산지증빙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다만, 한 국가 내에서는 재료뿐 아니라 가공공정, 부가가치 등 모든 생산 활동이 누적되는 완전누적이 가능<sup>92)</sup>한데 아세안 또는 EFTA를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경우 해당 국가 간에는 당초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완전누적이 가능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음
    - 1:N 협정에서 우리나라의 원재료는 우리나라가 최종수출국 또는 최종수입국이 아닌 경우 다자누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다수국보다 우리나라의 원재료 사용 등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완전누적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9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 산업의 FTA 이해와 활용』, 2014, p.96

- 따라서 아세안이나 EFTA 국가 간 누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누적을 위하여 계약상대국이 아닌 계약당사국 내에서도 발행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하는데 누적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간소화할 수 있음
    - 다만, 한-아세안 FTA에서 기관발급을 채택한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EFTA FTA에서 다자누적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원산지신고문언에 누적을 위한 발급을 표시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별도 서식의 마련 없이 다자누적을 증빙할 수 있음

## 2) 교차누적의 원재료에 적용하는 원산지규정 명시

- 교차누적의 도입 취지 등을 살펴보았을 때 제3국과 계약상대국 간의 FTA인 NAFTA 또는 한-미국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누적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한-캐나다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면 미국 공급자의 원산지판정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협정세율 적용에 따른 수출원가의 절감이라는 효용도 없으므로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 반면, 미국 공급자의 수출원가 절감이 가능한 NAFTA 또는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은 협조 유인이 있음
- 제3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면 원재료 공급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 없이 기존 수출 시의 동일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교차누적이 가능함

- 원재료 공급자는 기존에도 NAFTA 또는 한-미 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추가적인 변경이나 절차 없이 캐나다 생산자의 원산지누적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음

### 3) 완전누적의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증빙서류 양식 마련

- 완전누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양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정과 부가가치를 누적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과 비원산지재료에 투입된 재료들의 가격, 품목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수출자)와 공급받는 자(수입자)의 명세, 비원산지재료의 구체적인 품명 및 규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 국내에서 2 이상의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전단계의 제조공정, 부가가치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국내제조(포괄)확인서<sup>93)</sup>를 발급하는데 이에 준하여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마련할 수 있음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란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공급물품 명세에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가격, 주요생산공정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재료 명세 란에는 공급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가격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급물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를 기재하지 않고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만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원산지재료 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공급물품의 역내가치는 공급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 가격을 공제한 가격이 되므로 역내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도 누적할 수 있음

---

93) 해당 양식은 부록 2 참조

- EEA의 경우도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누적을 위하여 공급자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라는 양식<sup>94)</sup>을 마련하고 있는데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도입에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공급자신고서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주소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급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명세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비원산지재료 명세란에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재료는 EEA에서 생산된 원산지재료를 확인하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음
  - 특히 공급자신고서에는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에 따른 부가가치를 누적하기 위하여 가공공정이 EEA 역외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 공정을 통해 발생한 총부가가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나. 원산지검증 문제

### 1) 다자누적이 적용된 경우 원산지검증절차 별도 마련

- 다자누적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 당사국이 아닌 다른 계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검증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원산지검증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원산지검증에 착수한 후 세관당국이 검증대상 물품에 누적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증기간을 직접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증대상자가 검증의 통보를 받으면 사전에 누적적용 물품에 대한 검증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누적이 적용 여부, 누적국가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원산지검증대상 선정 시 세관당국이 이를 미리 인지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94) 해당 양식은 부록 3 참조

- 누적 적용을 인정한 세관당국은 원산지검증 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하거나 누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원산지검증 방법 및 절차 등을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검증대상자가 보다 쉽게 검증에 대응할 수 있고, 대응기간의 촉박함, 증빙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한 검증요청의 미회신, 미비한 서류구비 등이 발생할 위험이 감소함
- 실제로 EE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누적의 적용 여부와 누적이 발생한 국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누적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NO CUMULATION APPLIED'라는 문구를, 누적이 적용된 경우 'CUMULATION APPLIED WITH'라는 문구와 함께 누적이 적용된 국가(들)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누적의 적용 여부를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 교차누적의 원재료에 적용하는 원산지검증 규정 명시

- 교차누적의 경우 최종 제품에 적용된 FTA 원산지규정과 원재료에 적용된 FTA 원산지 규정이 상이한데, 원산지검증도 최종 제품과 원재료에 적용된 각각의 FTA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교차누적을 허용하고 있는 협정에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캐나다 FTA에서 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자동차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한-미 FTA나 NAFTA에 따를 것을 규정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다면 한-미 FTA는 한-캐나다 FTA와 마찬가지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캐나다 세관당국의 방문 검증 통보<sup>95)</sup>가 오면 우리나라 세관이 미국의 원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캐나다 세관당국이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세관당국에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세관당국이 미국의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수입국이 교차누적이 적용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의 세관당국에 반드시 통보를 하고, 체약상대국의 세관당국에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협조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최종 제품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원재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세관당국에 검증 계획을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 검증 통보를 받은 체약상대국은 누적대상이 된 원재료에 대한 검증을 한-미 FTA 또는 NAFTA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통보하여야 함
- 원재료의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수입국 세관당국은 해당 결과를 근거로 최종 제품의 검증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최종 제품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해당 제품의 교차누적 적용 여부를 미리 알고 있어야 체약상대국에 검증계획 등을 통보할 수 있으므로 다자누적이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서에 누적이 적용 여부와 누적국가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누적국가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제3국인 경우 교차누적이 적용되었음을 세관당국이 인지하고, 체약상대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5) 한-캐나다 FTA 제4.6조(원산지검증)

2. 제1항 나호에 따른 검증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가. 다음에 대하여 방문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2)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그리고
- 3)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방문을 제안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대사관

- 또한 교차누적이 적용된 경우 계약당사국에서 실시되는 원재료의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종 제품의 원산지검증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함
- 계약상대국의 원재료에 대한 검증이 끝난 후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검증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재료의 검증기간을 검증에 소요된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함

## 다. 공급자 등의 협조 문제

### 1)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의 의무화

- 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자누적이거나 완전누적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이 원재료 공급자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내에서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으로 원재료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경우도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으로 규정<sup>96)</sup>하고 있어 그 수취가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누적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발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EEA 협정의 경우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공급자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의 발

9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재료 공급자의 협조를 강제하고 있음

## 2)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의 확대 시행

- 우리나라는 원산지확인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산지판정도 관세사 등 제3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란 수출업체 및 국내업체에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내수거래업체에 원산지확인서 형식적인 오류, 원재료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의 근거자료 정합성 등을 확인해주는 제도임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원재료 공급자는 제3자에게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3자는 생산자(최초 수입자, 최종 수출자)에게 원산지판정 결과를 통보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제3자는 원재료에 대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함
  - 이와 같이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면 원재료 공급자의 원치 않는 비밀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자의 원산지판정 등에 따른 업무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원산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관세사 등의 외부인 등으로 지정<sup>97)</sup>할 수 있는바 외부 원산지관리전담

9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②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1.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자를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와 같이 이용할 수 있음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의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원재료 공급자가 관련 정보의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음
- 원산지관리전담자는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의 제조원가 등의 노출이 불가피한 완전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만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활용하고, 나머지 원산지 관련 업무는 내부의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수행한다면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음

## V. 결 론

- 글로벌 생산 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누적기준이 다자간 FTA에서 역내 생산 공급망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누적을 통하여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다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음에 따라 수출자의 원가절감, 수입자의 협정세율 적용 등의 특혜가 가능함
  - 따라서 누적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다자 FTA 시대에 필수라고 할 수 있음
  
- 누적이란 원산지결정 시 다른 당사국에서 투입된 재료, 공정,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처럼 간주하는 FTA 원산지규정 중의 하나임
  - FTA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할 정도의 가공을 수행한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데 누적기준은 이를 확대하는 개념임
  
- 누적이란 누적을 통하여 원산지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누적이 허용되는 체약당사국의 수, 누적이 적용되는 영역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누적이 대상은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재료만을 누적하는 재료누적과 공정과 부가가치를 누적하는 공정누적으로 분류됨
    - 재료누적은 누적대상의 일부인 원산지재료만의 누적을 허용하므로 부분누적으로, 공정누적은 모든 누적대상의 누적을 허용하므로 완전누적으로 부르기도 함
  - 누적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자누적, 다자누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누적을 영역에 따라 구분하면 누적이 FTA 내의 체약상대국 간에만 허용되는 경우인 FTA 내 누적(intra-FTA)과 누적이 체약당사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제3국에 대하여도 허용되는 경우인 FTA 간 누적(inter-FTA)으로 구분됨
  - FTA 간 누적은 체약당사국과 제3국의 공동 원산지규정의 유무에 따라 유사누적과 교차누적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음
  
- 2017년 현재 발효된 우리나라의 모든 FTA는 재료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 재료누적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국인 다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소재한 원재료 공급자가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다만 한-아세안, 한-EFTA와 같이 다자누적이 발생할 수 있는 협정의 경우 서로 체약상대국이 아닌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공정누적(양자간 완전누적)을 규정하고 있음
  - 공정누적은 다른 당사국에서 발생한 공정과 부가가치의 누적을 허용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FTA에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공정누적을 허용한 다자 FTA는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EEA 협정, NAFTA 등의 다자협정에서 공정누적(다자간 완전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 EEA에서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되거나 창출된 공정이나 부가가치를 누적하기 위하여 공급자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라는 양식을 마련하고 있음
  - 재료의 누적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공정이나 부가가치의 누적을 위하여 공급자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함
  
- FTA 간 누적 중 공동 원산지규정이 있는 제3국과의 누적을 허용하는 유사누적은 EEA

협정에서 지중해연안 국가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사누적을 적용하기 위하여 유사누적이 허용되는 국가 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원재료 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MC EUR.1, MC EUR-MED, 송장신고서, 송장신고서 MC EUR-MED)를 구비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판정 시 누적을 적용했는지 여부와 누적을 적용한 경우 그 국가를 기재하여야 함

□ 계약당사국과 각각 FTA를 체결하였지만 공동 원산지규정이 없는 제3국과의 누적을 허용하는 교차누적은 한-캐나다 FTA에서 미국산 일부 물품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음

- 미국산 원재료를 한-캐나다 FTA에 따른 역내산 재료로 간주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 하지만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미국과 한국 또는 미국과 캐나다가 체결하고 있는 한-미 FTA 또는 NAFTA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지 한-캐나다 FTA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이와 같이 누적을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완전누적), 유사누적과 교차누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협정, 적용방법 등을 살펴보았을 때 규정의 미비 등으로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은 누적대상의 증빙 문제, 원산지검증 문제, 공급자 등의 협조 문제의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누적을 적용하기 위하여 누적대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나 그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어떤 규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 1:N 협정에서 다자누적의 경우 계약상대국이 아닌 당사국 간에 누적이 이루어진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누적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적용하더라도 사후검증 시 추징의 위험이 있음
- 교차누적된 원재료의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어떤 FTA의 원산지규정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누적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적용으로 사후검증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 완전누적은 비원산지재료의 공정, 부가가치의 누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발효 협정 중 이러한 생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은 없음

□ 누적대상의 증빙 문제는 증명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 적용 규정의 명확화, 증명 양식의 마련 등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함

- 다자누적 증빙의 경우 계약상대국이 아닌 당사국 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다자누적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교차누적의 적용을 위하여 대상이 되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해당 원재료의 수출입국이 계약당사국인 제3국과의 FTA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
- 완전누적에서 비원산지재료의 누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EEA의 공급자신고서 등을 참고하여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되거나 창출된 공정이나 부가가치를 증빙할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하여야 함

□ 다자누적, 교차누적 등을 적용하여 생산된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시 수출자와 수입자 외에 제3국에 소재한 원재료 공급자도 검증의 대상이 됨에 따라 검증대응 등에 어려움이 있음

- 다자누적의 경우 원재료공급자가 수출입 국가가 아닌 다른 당사국에 소재하므로 원산지검증 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으나 누적이 적용되지 않은 물품과 동일한 원산지검증 절차를 따르고 있음
- 교차누적의 경우 제3국에 소재하는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주체, 방법 등을 어떤 FTA에 따라야 하는지 규정이 없음

□ 이와 같은 원산지 검증에서의 어려움은 누적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절차의 마련

등으로 완화할 수 있음

- 원재료공급자가 다른 당사국에 소재하는 다자누적이 적용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절차와 기간 등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차누적이 적용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검증 시 원재료가 수출입 된 제3국과의 FTA에 따라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최종 제품의 원산지검증 시 원재료 공급국인 제3국과의 협력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누적이 적용을 위하여 원재료 공급자는 수출원가 절감 등의 혜택 없이 최종 제품의 FTA 혜택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부담하거나 영업비밀 등을 노출시켜야 함에 따라 원재료 공급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 다자누적의 경우 원재료의 수출입 국가가 서로 계약상대국이 아니므로 원재료 공급자는 FTA 협정세율 적용에 따른 원가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누적이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음
- 완전누적의 경우 공정, 부가가치를 누적하므로 원재료 공급자는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제조원가, 가공공정 등을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원재료 공급자의 협조 문제는 협조의 의무화, 외부의 전문가 활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원재료 공급자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적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원산지 공급자의 영업비밀의 직접 노출 없이 누적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연구는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규정의 미비,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향후 연구에는 공정누적 적용 FTA의 확대, 1:N 협정에서의 불평등한 누적 개선, 주변국과의 교차누적 허용 등과 같이 우리나라 원재료 사용 촉진, 역내가공 활성화, 경제통합의 가속화 등 누적기준을 통한 FTA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 참고문헌

- 강준하, 「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 3.
- 관세청,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주요내용」, 2014. 12.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Ⅱ』, 2010. 9.
- \_\_\_\_\_, 「FTA 활용 성공사례」, 2016.
- 권순국,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2. 12.
- 김영춘·박홍규·송병준,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5. 5.
- 김영훈, 「FTA원산지기준상 특례에 관한 일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4. 12.
- 김지선·유승록,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포스코경영연구소, 2015. 2.
- 박지은·제현정,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TRADE FOCUS』 2016년 18호, 한국무역협회, 2016. 5.
- 인천상공회의소, 『한-EU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2010.
- 임목삼·임성철,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무역학회지』 제41권 제5호, 한국무역협회, 2016. 11.
- 정성훈·강현수, 「유럽연합의 지중해 지원정책: 문명과 경제 사이」, 『한국경제지리학회 2003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3.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EU 정책 브리핑』, 외교통상부, 2차 개정판, 2010.
- 진병진·임병호·유정호, 「FTA 교차누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6. 1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 산업의 FTA 이해와 활용』, 201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FTA 활용』, 2011.

APEC, 2009/CT12/CTI-MAG/TPD/00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EXPLANATORY NOTES CONCERNING THE PAN-EURO-MEDITERRANEAN PROTOCOLS ON RULES OF ORIGIN”, 2007.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SECO), *Cro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 2013.

Stefano Inama,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Swiss Federal Customs Administration, “Guide to the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of origin”, 2016. 2.

관세청 FTA포털, <http://customs.go.kr/portalIndex.html>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CBP, <https://www.cbp.gov>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

## 부록 1. 우리나라 FTA 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1: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 (Name and Address)			3: Im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li> <li>●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li> <li>●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li> </ul>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 (Print or Type)			Title	
Date (MM/DD/YY)			Telephone / Fax / E-mail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REPUBLIC OF SINGAPORE	
2. Consigne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3. Departure Date: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NO.	
4. Vessel's Name/Flight No.:	NO UNAUTHORIZED ADDITION/ALTERATION MAY BE MADE TO THIS CERTIFICATE	
5. Port of Discharge: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We hereby declare that the details and statements provided in this Certificate are true and correct.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Signature:	
	Name:	
	Designation:	Stamp
	Date:	
9. Marks & Numbers	10. No. & Kind of Packages:	11. Quantity & Unit
	Description of Goods: (include brand names if necessary)	
	HS Subheading:	
	Origin Criterion: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We hereby certify that evidence has been produced to satisfy us that the goods specifi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7.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Reference No.:				
2. Importer						
		<b>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				
3. Departure Date:		4. Vessel's Name/Flight No.: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rigin:		
8. Item Number	9. Description of Goods	10. HS No.	11. Marks & Numbers	12. Quantity & Unit	13. Origin Criterion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5. Certification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Country)</p> <p>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Importing Country)</p>			<p>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p> <p>Place and Date:</p> <p>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p>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p>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p>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sup>1)</sup>)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up>2)</sup> preferential origin.</p> <p>.....<sup>3)</sup></p> <p>(Place and date)</p> <p>.....<sup>4)</sup></p> <p>(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sup>5)</sup></p> <p>(Remarks)</p>
<p>작성방법</p>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li> <li>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li> <li>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li> </ul> </li> <li>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li> <li>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p>"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p> </li> </ol>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b>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hr/>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hr/>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b>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Country) 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6. Remark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p>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p>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sup>(1)</sup>)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up>(2)</sup> preferential origin.</p> <p>.....<sup>3)</sup></p> <p>(Place and date)</p> <p>.....<sup>4)</sup></p> <p>(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작성방법</p>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li> <li>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li> <li>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li> <li>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li> </ol>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부록 4-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b>CERTIFICATE OF ORIGIN</b> <b>Form for Korea-Peru FTA</b>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HS code (Six digit code)	9. Origin criterion	10.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sup>3</sup> , etc.)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div style="text-align: center;">(Country)</div>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div style="text-align: center;">(Importing country)</div>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3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Peru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장소 및 날짜, 수입기관의 서명 및 소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_ _ _ / _ _ / _ _ To: _ _ _ / _ _ / _ _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_____ E-Mail (optional): _____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p>I certify t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li> <li>-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li> <li>-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Peru Free Trade Agreement.</li> </ul> <p>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p>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YYYY MM DD _ _ _ / _ _ / _ _			Telephone: _____ Fax: _____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1. Issuing Number:		
2.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From: (DD/MM/YYYY)                      To: (DD/MM/YYYY)	
4. Produc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5.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6.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invoice number or 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where appropriate):	7. Harmonized System code(six digits):	8. Preference criterion:
9. Observations (optional field):		
10. Declaratio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Signature:	Company or Authorised Body	
Name:	Title:	
Date:	Contact details: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From: ____/____/____ YYYY MM DD To: ____/____/____ YYYY MM DD			
3. Producers'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p>I certify t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li> <li>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li> <li>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Canada Free Trade Agreement.</li> <li>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li> </ul>					
11.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____/____/____ YYYY MM DD		Telephone:		Fax: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b>****Origin Declaration</b> <b>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b>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Observation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YYYY MM DD /        /        /			Telephone:                      Fax: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b>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b>CERTIFICATE OF ORIGIN</b> <b>Form for Korea-China FTA</b>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sup>3</sup> ,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 부록 3. EEA 공급자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

#### SUPPLIER'S DECLARATION

for goods which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EEA without having obtained preferential origin status

I, the undersigned, supplier of the goods covered by the annexed document, declare that:

1. The following materials which do not originate in the EEA have been used in the EEA to produce these goods:

Description of the goods supplied <sup>(1)</sup>	Description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Heading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sup>(2)</sup>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sup>(2)</sup> <sup>(3)</sup>
.....	.....	.....	.....
.....	.....	.....	.....
.....	.....	.....	.....
<b>Total</b>			.....

2. All the other materials used in the EEA to produce these goods originate in the EEA.

3. The following goods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outside the E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Protocol 4 to the Agreement and have acquired the following total added value there:


Description of the goods supplied	Total added value acquired outside the EEA <sup>(4)</sup>
.....	.....
.....	.....
.....	.....

(Place and date)

(Address and signature of the suppli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must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부록 4. EEA 원산지증명서

MOVEMENT CERTIFICATE


1. <b>Exporter</b> (Name, full address, country)	<b>EUR.1 No A 000.000</b>		
	Se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3. <b>Consignee</b> (Name, full address, country) (Optional)	2. <b>Certificate used in preferential trade between</b>		
	..... <b>and</b> .....		
	(Insert appropriate countries, group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4. <b>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in which the products are considered as originating</b>	5. <b>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of destination</b>	
6. <b>Transport details</b> (Optional)	7. <b>Remarks</b>		
8. <b>Item number;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sup>(1)</sup>; Description of goods</b>	9. <b>Gross mass (kg) or other measure (litres, m<sup>3</sup>, etc.)</b>	10. <b>Invoices</b> (Optional)	
11. <b>CUSTOMS ENDORSEMENT</b>		12. <b>DECLARATION BY THE EXPORTER</b>	
<i>Declaration certified</i> Export document <sup>(2)</sup> Form ..... No ..... Of ..... Customs office ..... Issuing country or territory ..... ..... (Place and date) ..... (Signature)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issue of this certificate  ..... (Place and date)  ..... (Signature)	
(1) If goods are not packed, indicate number of articles or state 'in bulk' as appropriate. (2) Complete only where the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require.			

<p><b>13. REQUEST FOR VERIFICATION, to</b></p>	<p><b>14. RESULT OF VERIFICATION</b></p>
<p>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and accuracy of this certificate is requested.</p> <p>..... <i>(Place and date)</i></p> <p>..... <i>(Signature)</i></p> <p style="text-align: center;">Stamp</p>	<p>Verification carried out shows that this certificate <sup>(1)</sup></p> <p><input type="checkbox"/> was issued by the customs office indicated and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urate</p> <p><input type="checkbox"/>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as to authenticity and accuracy (see remarks appended).</p> <p>..... <i>(Place and date)</i></p> <p>..... <i>(Signature)</i></p> <p style="text-align: center;">Stamp</p> <p>_____</p> <p><sup>(1)</sup> Insert X in the appropriate box.</p>

NOTES

1. Certificate must not contain erasures or words written over one another. Any alterations must be made by deleting the incorrect particulars and adding any necessary corrections. Any such alteration must be initialled by the person who completed the certificate and endors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ssuing country or territory.
2. No spaces must be left between the items entered on the certificated and each item must be preceded by an item number. A horizontal line must be drawn immediately below the last item. Any unused space must be struck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ny later additions impossible.
3. Goods must be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practice and with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m to be identified.

MOVEMENT CERTIFICATE

1. <b>Exporter</b> (Name, full address, country)	<b>EUR-MED No A 000.000</b>		
	Se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3. <b>Consignee</b> (Name, full address, country) (Optional)	2. <b>Certificate used in preferential trade between</b>		
	..... <b>and</b> ..... (Insert appropriate countries, group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4. <b>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in which the products are considered as originating</b>	5. <b>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of destination</b>	
6. <b>Transport details</b> (Optional)	7. <b>Remarks</b>		
	<input type="checkbox"/> <b>Cumulation applied with</b> ..... (name of the country/countries) <input type="checkbox"/> <b>No cumulation applied.</b> (Insert X in the appropriate box)		
8. <b>Item number;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b> <sup>(1)</sup> ; <b>Description of goods</b>	9. <b>Gross mass (kg) or other measure (litres, m<sup>3</sup>, etc.)</b>	10. <b>Invoices</b> (Optional)	
11. <b>CUSTOMS ENDORSEMENT</b>		12. <b>DECLARATION BY THE EXPORTER</b>	
Declaration certified Export document <sup>(2)</sup> Form ..... No ..... Of ..... Customs office ..... Issuing country or territory ..... ..... (Place and date) ..... (Signature)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issue of this certificate. ..... (Place and date) ..... (Signature)	
<sup>(1)</sup> If goods are not packed, indicate number of articles or state 'in bulk' as appropriate. <sup>(2)</sup> Complete only where the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require.			

<p><b>13. REQUEST FOR VERIFICATION, to</b></p>	<p><b>14. RESULT OF VERIFICATION</b></p>
<p>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and accuracy of this certificate is requested.</p> <p>..... (Place and date)</p> <p>..... (Signature)</p> <p style="text-align: center;">Stamp</p>	<p>Verification carried out shows that this certificate (*)</p> <p><input type="checkbox"/> was issued by the customs office indicated and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urate.</p> <p><input type="checkbox"/>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as to authenticity and accuracy (see remarks appended).</p> <p>..... (Place and date)</p> <p>..... (Signature)</p> <p style="text-align: center;">Stamp</p> <p>..... (*) Insert X in the appropriate box.</p>

## NOTES

1. Certificate must not contain erasures or words written over one another. Any alterations must be made by deleting the incorrect particulars and adding any necessary corrections. Any such alterations must be initialled by the person who completed the certificate and endors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ssuing country or territory.
2. No spaces must be left between the items entered on the certificate and each item must be preceded by an item number. A horizontal line must be drawn immediately below the last item. Any unused space must be struck through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ny later additions impossible.
3. Goods must be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practice and with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m to be identified.

관세연구 17-01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

발 행 2017년 3월 31일  
저 자 강성훈 · 이재선 · 김미정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에스디워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ISBN 978-89-8191-868-2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